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周 澤

青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Causes and Treatments of
Juvenile Delinquency

1 9 9 8 年 2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千 炳 德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鄭 周 澤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Causes and Treatments of
Juvenile Delinquency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千

炳

德

千炳德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연구의 目的	1
第 2 節	연구의 範圍 및 方法	2
第 2 章	青少年犯罪에 對한 理論的 考察	4
第 1 節	青少年的 定義	4
第 2 節	青少年期の 特性	7
第 3 節	青少年 犯罪의 概念	9
第 4 節	青少年 犯罪의 原因에 對한 理論的 考察	11
第 3 章	青少年犯罪의 實態 및 問題點	26
第 1 節	青少年 犯罪의 實態	26
第 2 節	青少年 犯罪의 實態에 나타난 問題點	37
第 4 章	青少年犯罪에 對한 對策	53
第 1 節	家庭에서의 對策	53
第 2 節	學校에서의 對策	58
第 3 節	社會에서의 對策	62

第 4 節 國家에서의 對策	66
第 5 章 結論	72
參 考 文 獻	75
ABSTRACT	80

表目次

<表 2- 1> 國家別 青少年의 年齡規定	6
<表 3- 1> 青少年犯罪의 年齡別 發生現況	27
<表 3- 2> 青少年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1994)	27
<表 3- 3 > 青少年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1995)	28
<表 3- 4> 青少年犯罪의 原因別 現況 (1995)	29
<表 3- 5> 青少年犯罪의 原因別 現況 (1994)	30
<表 3- 6> 青少年犯罪의 原因別 現況 (1995)	31
<表 3- 7> 青少年犯罪의 家族狀況別 現況 (1992)	32
<表 3- 8> 青少年犯罪의 家族狀況別 現況 (1993)	32
<表 3- 9> 青少年犯罪의 家族狀況別 現況 (1994)	33
<表 3-10> 青少年犯罪의 家族狀況別 現況 (1995)	34
<表 3-11> 青少年犯罪의 教育程度別 現況	35
<表 3-12> 警察處理結果 (1993)	36
<表 3-13> 警察處理結果 (1995)	37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政治, 經濟, 社會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한 産業化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른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都市化 過程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價値와 規範體制의 혼란에서 오는 각종 都市問題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宗教, 傳統, 文化 등에 있어서 家庭 및 社會의 기능이 富와 權力을 추구하려는 政治·社會的 욕구에 가려짐으로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은 이룩하였으나 정신, 문화적으로는 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올바른 價値와 規範體制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¹⁾

게다가 現代 都市社會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靑少年들에 비해 더 급속한 心理的, 社會的인 變化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진출을 위한 학습기간이 더욱 연장됨에 따라 그 정체감이 크며, 또한 主體性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더구나 現代社會의 급격한 변화와 형식적인 人間關係, 그리고 첨단과학의 발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식의 혼란과 정체감에 빠지게 하여 각종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研究는 靑少年犯罪에 대한 理論的 考察과 發生實態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靑少年犯罪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 豫防策을 강구해 보고자 하

1) 정우식, 『靑少年問題, 그 喪失과 對策』, 삼성출판사, 1988, pp. 5-6.

2) 김영수, “都市病理面에서 본 靑少年 犯罪要因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2.

는데에 研究目的을 둔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우리나라의 靑少年犯罪은 오늘날 커다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는데 급격한 社會의 變化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심각한 樣相을 띠고 있다. 이러한 靑少年犯罪의 原因은 대부분 家庭의 無關心, 學校教育의 기형화, 급격한 社會變動에 따른 價値觀의 混同 및 정부의 靑少年犯罪 政策의 부재 등 복합적인 要因에 기인한다.

따라서, 本 論文의 研究範圍는 時間的인 範圍와 內容的인 範圍로 구분된다. 먼저 時間的 範圍로는 1991년도 이후부터 1995년까지의 靑少年犯罪을 대상으로 다루어 연구하였으며 그 내용적인 範圍로도 靑少年犯罪의 유형별, 연령별 및 학력별의 현황을 分析하였으며 靑少年犯罪에서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생까지 범죄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本 論文에서는 주로 文獻研究를 통하여 전반적 理論的背景을 考察하였고, 靑少年犯罪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하여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와 국내외에서 발표된 청소년범죄에 관한 논문, 서적 등을 참고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로서는 경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문화체육부가 발간한 청소년백서를 위시한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기타 신문 및 잡지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文獻研究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관련문제를 다루었던 전문연구자들과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本 研究의 內容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와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靑少年犯罪에 대한 理論的 考察 및 研究動向 그리고 靑少年犯罪의 發生原因에 대하여 社會的·遺傳的·心理的 요인으로 나누어考察하였다. 제3장에서는 各種 統計資料를 통해 靑少年犯罪의 類型別·學力別·年齡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靑少年犯罪의 家庭的·敎育的·社會環境的 側面의 問題點을 제기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의 動向 및 敘述的인 考察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나라 靑少年犯罪에 따른 豫防策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結論으로서 지금까지의 內容을 요약하고 靑少年들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國家나 社會, 學校와 家族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第2章 青少年犯罪에 對한 理論的 考察

종래의 犯罪研究家들 사이에는 犯罪의 原因에 관해서 素質論과 環境論이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犯罪란 개인과 사회와의 복잡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므로 이것을 素質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반면에 社會環境에 국한시켜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이다. 그 이유는 素質과 環境이 밀접하게 不可分の 關係로 인간에게 작용하며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青少年犯罪에 대해서도 素質的인 面과 社會的 環境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第1節 青少年的 定義

青少年이라는 用語 Adolescence는 라틴語의 Adollescere에서 由來한 것으로 「成長」 또는 「成熟으로의 成長」을 意味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成長이란, 生理的·心理的·社會的인 成長을 가리키는 含蓄的인 말로서, 傳統的인 觀點에서 청소년이란 社會-心理的 意味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依存的인 兒童期로부터 自立的인 成人期로 가는 轉換期에 놓여 있는 非構造的이고도 분명치 않은 中間人의 存在로 認識되어 왔다.

1. 一般的 概念

青少年을 社會的으로 또는 연령적으로 明確하게 구분하여 定義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며 學者들의 이에 대한 意見도 각기 다르다. 一般的으로 青少年이라 함은 연령으로 7~8세에서 24~25세에 이르는 少年과 靑

年을 總稱하며 이는 실로 광범위한 人口集團을 형성하고 있다.³⁾

一般的으로 少年이란 法律的으로 呼稱하는 用語이지만 靑少年을 社會的으로 區別하여 定義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 法律上的 概念

靑少年에 대한 概念은 법률로도 明確히 規定되어 있지 않다. 그 理由는 世界各國의 法令上 연령區分이 一定하지 않기 때문이다.⁴⁾ (表 1-1)은 國家別 靑少年의 法令上의 연령限界를 나타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16세가 가장 많은 分布를 보이며, 또 가장 적은 分布는 15세이다. 이와 같은 差異는 各國이 處한 地理的 立場이나 文化水準의 程度가 달라 成熟度가 다른 때문이다. 또 少年으로 認定된 연령 上限이 가장 낮은 國家는 英國이며, 높은 國家는 美國의 캘리포니아, 스웨덴, 칠레 등이며 이곳들은 20세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靑少年”이라는 法令上 用語는 없으나 現행법상 “少年”, “아동” 또는 “미성년자” 등으로 구분하며, 아동, 소년 등의 법령규정에 있어서도 一致하고 있지 않으며 法令에 따라 각각 다르게 規定되어 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을 兒童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少年犯罪와 非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층이 이처럼 靑少年이란 말은 統一的으로 定義하기가 어렵고 연령적으로도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형편이다.

3) 하상격, 「청소년 교도 사업」, (서울, 현대 교육업적 출판사 1962), p.166.

4) 小林文男, 「靑少年期」, (東京, 秋田書店, 1986), p.36

<表 2 - 1> 國家別 靑少年의 年齡規定

연령 국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 국														
일 본														
이 탈 리 아														
노 르 웨 이														
스 위 스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벨 기 에														
덴 마 아 크														
핀 란 드														
폴 란 드														
프 랑 스														
스 웨 덴														
영 국														
그 리 이 스														
이 스 라 엘														
아 메 리 카									8개주 7개주	10개주	24개주 3개주	1개주		3개주
캐 나 다														

出處：小林文男, 靑少年期, (東京, 秋田書店, 1986), p.36

3. 心理學上的 概念

心理學者 「스프랑거」(E.Spranger)는 成長期를 8세 ~12세까지로 보고 이것을 연령에 의해서 限定하는 것에는 별로 큰 意味를 두지 않고 있다. 그것은 思春期의 始作은 氣候, 風土, 個人的인 格차로 인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學者에 따라서는 靑少年期를 靑年前期(14~16,7세), 靑年後期(16,7세 이후)로 나누고 있으나, 靑年心理學에서는 14세~22, 23세 까지를 靑年期로

보고 있으며 男子보다 女子가 1, 2年 빨리 경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第 2 節 靑少年期の 特性

靑少年期는 사람의 精神 또는 身體가 크게 飛躍하는 變動期이며, 兒童期の 연약한 個性이 成人의 安定된 人格型으로 成長하는 過渡期이기도 하다. 이 時期는 단순한 身體的·生理的 成長뿐만 아니라 精神的·社會的 成熟 등 多様な 變化와 發達의 양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時期에 어떠한 經驗을 하느냐에 따라서 靑少年期の 性格形成이나 成長發達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며, 그 後의 人格形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觀點에서 靑少年期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特徵은, 學者에 따라서 달리 表現되고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指摘되고 있다.

첫째, 「自我」를 發見하는 時期이다.

우리는 흔히 靑少年期를 第 2의 誕生이라고 부르고 있다. 靑少年期는 人生의 再出發이 始作되는 時期요, 精神과 生活樣式의 再體制化가 이루어지는 時期인 것이다. 따라서 靑少年期는 兒童期에 지냈던 身體我로서의 自我로부터 社會와 對立하는 自己를 反省하고 自覺하는 精神我요, 社會我를 이루는 自我意識을 定立하는 過渡期的 時期이다.⁵⁾

둘째, 心理的 離乳가 이루어지는 時期이다.

家族의 監督으로부터 떠나서 獨立된 하나의 人格體가 되려 하고, 이때의 모든 일은 後日의 人格形成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自我發見」이나 「心理的 離乳」는 不安定한 靑少年의 生活에서 安

5) 鄭寅錫, 「靑年心理學」, (서울 : 載東文化社, 1972), P.67.

定된 生活에로 再構成해 가는 過程이다. 前者는 意識面에서의 特徵이고, 後者는 社會的 關係, 特히 父母에 대한 關係에서 나타나는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否定期 또는 第 2 反抗期이다.

「Exner」는 思春期の 心理的 特性을 內的滿足의 欲求와 內的緊張에서의 脫出로 要約하고 있는데,⁶⁾ 靑少年들은 心身の 成熟過程에서 感受性이 예민해지고 不決感도 자주 느끼게 되며, 自己의 精神的 自主性을 強하게 主張하는 反面, 批判的 態度가 나타나는 結果, 周圍의 어른에 대해서 否定하거나 反抗하고, 自己自身에 대해서도 自信感喪失, 自己嫌惡, 憂鬱症 등에 걸리게 된다. 또 이들 靑少年들의 反抗的 言動은 既成世代가 갖고 있는 固陋한 習性, 規律, 價値觀 등에 대해서 예리한 直觀과 批判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이러한 批判的 思考에서 自己發展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한다.

넷째, 不適應 徵候의 時期이다.

靑少年期の 急激한 身體的 發達과 生理的 變化는 그들의 情緒에도 不安定을 가져와서 刺戟에 대한 過敏, 嗜好의 變化, 對象에 대한 感情的 反應을 나타내며, 環境如何에 따라서는 非行에 빠질 危險性이 있는 時期이다.

C. Buber의 경우 靑少年期를 不決感情과 不安定이 그 중심을 이루는 소극적 否定期라고 定義하면서, 이 時期의 心理的 特性을 ① 否定과 內的 不安定 ② 不調和의 矛盾 ③ 周圍로부터의 遮斷과 逃避 ④ 非妥協性으로 要約하고 있다.⁷⁾

6) 文鐘洙, “靑少年犯罪의 實態 및 傾向”,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論文集 第 5 輯 (1981), p.49.

7) 文鐘洙, 「上揭論文」, p. 52.

다섯째, 特有의 問題行動을 일으키는 時期이다.

靑少年期에는 特히 感情의 兩向性을 가짐으로써 反對되는 두 가지 感情 즉, 父母에의 依存과 父母로부터 獨立하고 싶은 마음, 順從과 反抗, 希望과 落望, 理想과 現實妥協 사이를 往來하고 있다. 아이로 취급하면 화를 내지만 반대로 어른취급을 하면 不安해 한다. 여기에서 靑少年期 特有의 顯한 問題行動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靑少年期에 싹트는 性的 關心도 많은 問題를 일으키고 있다. 靑少年들은 未知의 性生活에 대해서 強한 興味와 欲求를 갖게 된다. 性問題에는 社會的 타부가 있고 羞恥心이 強하기 때문에 남몰래 책이나 空想을 통해서 性的 關心을 充足하고 있다.

그리고 異성과 交際하면 그것을 至上의 것으로 생각하며, 친구나 父母의 信賴를 저버리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경우가 있다.

以上에서의 指摘처럼 兒童期와 成人期를 連結하는 過渡期的인 靑少年期는 發達段階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時期이며, 또한 많은 問題點을 지닌 時期로서 停滯危機, 挫折, 葛藤 등을 經驗하는 過渡期的 段階이면서 자아 정체감의 確立을 위해 자신 스스로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自律的 成人으로서 成長하기 위하여 모든 人格的, 理念的인 것과 情緒的인 反應과 行動을 바치려 努力하는 期間이랄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期는 단순한 過渡期로 가볍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獨自的인 生活樣式을 갖고 있는 時期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第 3 節 靑少年犯罪의 概念

非行(Delinquenc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過誤를 犯하다”, “義務를 怠

慢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行爲”가 非行이라고 불려진다⁸⁾. 非行이란 廣義로는 모든 反社會的 行爲를 포함하는 概念이지만 일반적으로는 “少年非行”이라는 狹義의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이 내린 非行의 定義를 보면 Emile Durkheim은 靑少年 非行은 “社會에 身體的, 精神的, 物質的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社會의 本質인 안정과 믿음에 피해를 주었을 때를 이른다”⁹⁾고 했다. 鄭寅錫은 “非行을 靑少年의 法律的, 社會的 規範으로부터 逸脫한 行爲 또는 그와 같은 규범에 위배된 행위”¹⁰⁾라고 하였다.

따라서 非行은 法律學的인 概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用語의 目的에 따라 社會화된 概念이라 할 수 있으므로¹¹⁾, 本 研究에서 사용하는 非行少年이란 概念은 法律的인 犯罪少年과 社會心理學的인 不適應少年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非行少年은 法律上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1) 非行少年 : 14세 以上 20세 미만인 少年으로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行爲를 한 者 (刑事責任)
- 2) 觸法少年 : 12세 以上 14세 미만의 者로서 少年法에 저촉되는 行爲를 한 者 (刑事責任없음)
- 3) 虞犯少年 : 12세 以上 20세 미만의 少年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不道德한 者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犯法할

8) 金濟漢, 『靑年發達心理學』, (서울 : 世光公社, 1984), p.261.

9) 鄭寅錫, 『現代靑年發達心理學』, (서울 : 載東文化社, 1980), p.254.

10) 『上揭書』, p.254.

11) 俞鎮植, “保護의 對策”, 『司法行政』, 183號, (司法行政學會, 1976. 3), p.59.

우려가 있는 者 (少年法 第 4 條)

4) 不良行爲少年 : 20세 미만의 少年으로서 飲酒, 喫煙, 凶器所持, 싸움, 婦女戲弄 등으로 自己 또는 他人의 德性を 害하는 風紀紊亂行爲者.

5) 要保護少年 : 非行少年은 아니나 虐待, 酷使, 放任된 少年 또는 보호자로부터 遺棄·離脫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其他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4 條 또는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보호를 要하는 者 등을 말한다.

제 4 절 靑少年犯罪의 原因에 對한 理論的 考察

靑少年들이 問題行動을 일으키게 되는 原因은 각각의 事例마다 다르고 또 個人的 特性이나 周邊 狀況, 背景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性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原因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靑少年犯罪原因에 관한 여러 理論들과 假定들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본다면 犯罪行爲者의 個人的 特性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는 心理學的 理論과 行爲者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況에서 그 原因을 찾고자 하는 社會學的 理論, 그리고 行爲者의 身體的, 遺傳的 缺陷에 의한 特殊한 病理的 現象이라는 生物學的 理論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心理學的 理論은 犯罪 및 脫線을 個人的 心性要因을 강조하고 있으며, 犯罪를 人格(personality) 構造로서의 價值觀이나 意見, 目標, 欲求, 關心, 興味 및 衝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社會學的 理論은 社會構造的 要因인 家庭環境, 父母, 兄弟들이나 交友關係,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社會的, 經濟的 構造라든가 規範的 文化體系 등이 問題行動을 誘

發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生物學的 理論은 주로 刑事政策學者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犯罪와 犯罪者의 身體的 特性의 相互關係에 주목하고 있다.

1. 社會學的 原因論

靑少年犯罪나 問題行動에 관한 原因論들은 行爲者의 個人的, 心理的 特性에 관한 微視的인 事實보다는 行爲者가 처해 있는 狀況, 社會構造, 統制 등에 그 一次的 關心을 갖고 접근하는 社會學的 理論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아노미理論, 差別的 接觸理論, 社會統制論, 烙印理論, 自己觀念理論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아노미理論(Anomie Theory)

더카임(Emile Durkheim)에 의해 전개된 아노미理論은 머튼(Robert K. Merton)에 의해서 體系的으로 發展되었다. 犯罪는 人間의 本性이라기보다는 社會構造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는 머튼은 어떻게 社會構造가 社會體系內的 特定 位置에 있는 사람들에게 同調的 行爲보다 非同調的 行爲를 하도록 더 많은 壓力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 그는 아노미¹²⁾의 發生原因을 文化的 目標과 制度化된 手段간의 不一致에서 찾고 있다. 文化的 理想 혹은 目標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經濟的 機會構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個人的 目標과 手段의 乖離가 불가피하고, 이와 같은 目標과 手段의 乖離는 規範體系의 瓦解 혹은 犯罪를

12) 아노미란 문자 그대로의 뜻은 無秩序(orderlessness), 無法(lawlessness), 또는 無規範(normlessness)의 뜻이나, 실제로는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라 전통적 價値體系와 規範에 변화가 올 때 일어나는 過渡期的 混沌狀態를 뜻한다. 金東一, “社會變遷과 아노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經濟, 第2卷 第4號 (1979. 12), pp.27-28.

저지르게 하는 原因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構造的 壓力은 社會體制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사회에서 逸脫行爲의 發生比率이 사회계층이나 인종집단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머튼(Merton)은 精神文化가 주는 文化的 目標과 行動文化가 주는 制度的 規範에 대한 個人的 態度를 조합시켜 個人的 社會的 適應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目標나 手段을 是認하느냐 拒否하느냐에 따라 個人的 適應樣式(modes of adaptation)이 각각 다르다고 보며 同調型(conformity), 革新型(innovation), 儀禮型(ritualism), 退行型(retreatism), 反逆型(rebellion)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첫번째 同調型(conformity)은 文化的 目標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制度化된 手段을 통해서 目標를 추구하는 양식으로 이는 현존 사회질서에 완전히 적응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革新型(innovation)은 文化的 目標는 수용하지만 制度化된 手段을 拒否하는 것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目標의 成就 등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脫線樣式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儀禮型(ritualism)은 文化的 目標는 拒否하지만 制度化된 手段을 수용하는 형태로 학문의 목적은 모르면서 기계적인 숙제에 충실한 개인 등에서 보여지는 儀禮的 行動樣式을 일컫는다. 넷째로 退行型(retreatism)은 文化的 目標과 制度化된 手段을 모두 拒否하고 逃避해 버리는 行動樣式을 말한다. 예컨대 알콜中毒者나 癲藥常習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反逆型(rebellion)은 기존의 文化的 目標과 制度化된 手段을 모두 拒否함과 동시에 새로운 目標과 手段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운동가나 혁명가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다.

2) 差別的 接觸理論(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아노미이론이 社會解體論¹³⁾과 관련된 社會構造的 觀點에서 靑少年犯罪 現象을 논하였다면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가 제시한 差別的 接觸理論은 社會化過程의 觀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逸脫者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逸脫化의 過程 파악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다.

서덜랜드(Sutherland)는 犯罪는 學習되며 犯罪의 技術, 動機, 態度도 他人과의 接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 그의 理論의 核心的인 內容이다. 결국 犯罪行爲는 그와 같은 犯罪文化와의 接觸이 강할 때 하나의 社會化過程의 現象으로서 學習·習得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犯罪行爲는 근본적으로 學習行爲로 보았고, 犯罪集團의 機能은 그 집단에 특유한 文化전통을 전달하는데 있으며, 犯罪人 혹은 非行少年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고유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差別的 接觸理論은 몇 가지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 ① 犯罪行爲는 學習된다.
- ② 犯罪行爲는 言語, 動作 등의 意思疏通過程을 통해서 학습된다.
- ③ 犯罪行爲는 家族, 親友, 同僚集團과 같은 一次的 親近集團의 親密한 人間關係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메스미디아 등도 영향을 끼친다.

13) 토머스(W. I. Thomas)는 集團의 각 成員에 대하여 현존하는 社會的 行動準則의 影響力の 減退를 社會解體라 하고, 이러한 社會解體는 社會變動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文化的 遲滯, 自然的 環境變化의 影響이 그 요인이라 하며 이러한 文化變化와 그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不適應現象이 犯罪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警察大學 附設 搜查幹部研修所, 前掲書, p.32.

14)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1966), pp. 81-82.

- ④ 犯罪行爲의 學習은 그 技術(techniques) 뿐 아니라 動機(motives), 욕구(drives), 合理化(rationalization), 태도(attitudes) 등이 같이 이루어진다.
- ⑤ 犯罪行爲의 動機, 合理化, 態度 등은 法規範을 遵守하는 集團에 속해 있는지, 違反하는 集團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특징지워진다.
- ⑥ 한 個人이 犯罪者가 되는 것은 法の 違反을 肯定하는 觀念들과의 接觸이 法の 違反을 否定하는 集團들과의 接觸보다 능가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⑦ 犯罪的 行爲樣式과 非犯罪的 行爲樣式과의 接觸差異는 그 頻度(frequency), 期間(duration), 優先性(priority) 및 強度(intensity)에 따라 결정된다.

위와 같은 원리에 근거한 서덜랜드(Sutherland)의 差別的 接觸理論은 個人이 逸脫文化와 接觸·社會化됨으로써 逸脫規範과 行爲를 學習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머튼의 아노미理論이 社會構造的으로 逸脫發生比率의 문제를 논했다면, 이 理論은 사람이 같은 地域에서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逸脫者가 되는데 반해 다른 사람은 逸脫者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社會學의 觀點에서 설명해 주고 있으며, 非行過程에 관한 효시적 이론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3) 社會統制理論(Social Control Theory)

社會統制理論은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社會的 結束(social bond)이 缺如될 때 야기되는 社會的 現象에서 찾으려고 한다. 허쉬(T. Hirschi)는 個人과 社會간의 結束이 강할수록 犯罪를 저지르지 않게 되며 그 結束이

弛緩될수록 犯罪을 저지를 확률은 높다고 한다.¹⁵⁾ 즉, 허쉬는 非行動機가 逸脫行爲로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는 社會統制的 側面에 주목하여 家族, 學校 및 기타 社會制度와의 紐帶가 약하고 미래를 위한 공부나 근면하게 일하는 未來指向의 行動에서 벗어난 少年들은 社會規範이 그들을 拘束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동시에 他人의 非難을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漂流狀態에서 犯罪을 범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¹⁶⁾

아노미理論이나 差別的 接觸理論이 社會의 規範과 價値를 遵守하는 것을 정상행동으로 보고, 違反하는 것을 비정상행동으로 본 것과는 달리 허쉬(Hirschi)의 社會統制理論에서는 人間의 本性이 非同調的이고 利己的이므로 犯罪을 저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홉스(Hobbes)적 人間觀 혹은 性惡說에 뿌리를 두고 規範違反 行爲를 정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理論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潛在的으로 犯罪과 逸脫을 감행할 수 있게끔 動機化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받을 害惡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犯罪과 逸脫行爲가 統制되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犯罪과 逸脫의 誘發은 個人이 犯罪行爲를 결행할 때 投入하는 노력이나 정력과 범죄 후 나타날 수 있는 效果간의 損益計算的 判斷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個人의 紐帶가 약화되면 犯罪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社會統制論者 등은 社會的 規範과 價値를 內面化함으로써 이루어지는

15) Travis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55~74.

16) 尹德重, 『犯罪社會學』, (서울: 博英社, 1982), p.154.

內的 統制(inner control)와 外部의 非難, 罰 등에 대한 認識에 의해 統制되는 外的 統制(outer control)를 구별하고 있는데 허쉬(Hirschi)는 犯罪를 범하도록 강요하는 緊張(strai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지르지 못하도록 抑制하는 社會的 紐帶의 形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4) 烙印理論(Labeling Theory)

烙印理論은 社會가 개인의 행위를 犯罪行爲로 어떻게 烙印하여 行爲者의 態度和 行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관해 그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犯罪는 사람이 저지르는 行爲의 特性이 아니라 타인이 行爲者에게 法과 制裁를 가한 결과일 뿐이라 하며, 犯罪行爲란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그 行爲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떤 反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른 行爲도 되고 나쁜 行爲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낙인의 賦課科程을 러머트(Lemert)는 一次的 逸脫(primary deviance)과 二次的 逸脫(secondary devia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一次的 逸脫에서 二次的 逸脫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론의 초점을 두고 있다.¹⁷⁾

一次的 逸脫은 어떤 개인이 순간적으로 規範을 위반할 수 있지만 외부에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社會的 反應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脫線者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二次的 逸脫이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社會的 評價나 反應이 나타나게 되고 行爲者를 脫線者로 烙印적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머트(Lemert)는 一次

17) Edwin M. Lemert,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7), p.17.

的 逸脫狀態에 있던 개인이 점차 二次的 逸脫狀態로 변모하고 二次的 逸脫者로 烙印찍히게 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一次的 非行이 반드시 二次的 非行으로 발전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一次的 非行行爲에 대해 非行이라고 汚名이 찍히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制限과 不利益을 받고 사회에서 疏外되며, 經歷非行者가 된다고 본다.

烙印理論은 모든 非道德的 行爲가 항상 非行으로 烙印되지 않는다는 근본문제를 제기하여 非行으로 규정되는 것이 무엇이며 非行者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烙印化의 過程을 보여준 점에서 그 중요한 공헌을 찾을 수 있다.

5) 自己觀念의 理論(Self-concept Theory)

레클레스와 디니츠(W. C. Reckless and Simon Dinitz)에 의하여 開發된 理論으로 동일한 非行多發地域에 거주하면서도 좋은 社會化過程을 거쳐 좋은 自己觀念을 가진 경우 非行的 文化 및 非行的 接觸에 感染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쁜 自己觀念을 가진 경우에는 非行的 文化 또는 非行的 接觸環境에 대한 抵抗力이 약화되고, 거기에 쉽게 感染・同化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自己觀念의 差異에 따라 좋은 自己觀念은 非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內的인 防波堤 또는 緩衝器로서 기능하며, 그렇지 않은 自己減價的 自己觀念은 그러한 防波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쉽게 非行性에 接近・感染・同化되게 한다는 것이다.¹⁸⁾

18) Walter C. Reckless, *The Crime Problem*, 4th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7), pp. 469~483.

2. 精神・心理的 原因論

사회학자들이 社會構造와 環境이 靑少年 行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면 精神・心理學者들은 個人的 動機나 性格的, 情緒的 特性에서 그 原因을 찾으려고 시도해 왔다. 즉, 犯罪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 행하여지는 인간의 활동이 일반인의 행동으로서 기대되는 통상의 態樣의 限度를 현저하게 逸脫한 異常的인 것이며, 그 배후에는 人格의 異常性, 특히 精神作用의 異常性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류의 이론들은 같은 文化나 社會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왜 어떤 사람들은 犯罪行爲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1) 精神分析學的 理論(Psychoanalytic Theory)

精神分析學的 理論은 주로 프로이드(Freud)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 내면속의 衝動과 本能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그 統制水準이 적절치 못하여 葛藤狀態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問題行動 혹은 非行行動을 일으킨다고 본다.

프로이드는 人間行動의 성질을 原欲(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간의 역동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⁹⁾ 여기에서 自我는 행동을 통제하며, 反應할 환경의 성질을 선택하고 本能중의 어떤 것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行動의 統制者로서 衝動이나 本能的 欲求의 근원인 原欲과 良心(conscience)이나 自我理

19) 張仁協, 『人間의 行動發達과 環境』, (서울: 進興文化社, 1982), pp.9~10; 山根 清道, 犯罪心理學(東京: 新曜社, 1981), p.9; George B. Vold and Thomas J. Bernard,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111~113.

想(ego-ideal)에 해당하는 超自我와 그리고 外界(out-world, 예를 들면 父母의 要求나 社會의 價値와 같은 것)의 壓力이라고 하는 세 개의 力學的 關係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自我는 原欲, 外界, 超自我라고 하는 삼자의 각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 삼자의 역학적인 관계가 취해져 있을 때 個人의 精神健康, 幸福感, 情緒的 安定感을 얻을 수가 있으며, 반대로 이 均衡이 무너졌을 때는 自我는 약해져서 苦惱와 神經症이 생긴다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 超自我의 形成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떠한 不安感이나 罪意識도 없이 原欲의 衝動에 따라 行動하는 사람으로 反社會的 行爲를 쉽게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²⁰⁾ 즉 이와 같이 超自我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거나 自我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本能이나 欲求에 의한 衝動을 統制하지 못할 때 犯罪行動을 일으킨다고 본다.

2) 性格과 犯罪

性格과 犯罪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犯罪人의 性格은 다종다양하며 일찍 범죄를 저지르는 者나 遲發性的의 犯罪도 별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犯罪少年들은 性格面에서 正常少年들에 비해 情緒의 安定度가 크게 빈약하며 力動的, 攻擊的, 冒險的이며, 또한 活動的이며 積極적인 面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량한 조건에서는 正常少年에 비해 쉽게 비행에 빠질 수 있다. 犯罪少年들은 精神內面에 緊張과 葛藤이 심하며 個人의 身體的, 精神的, 心理的, 情緒的 缺陷으로 인하여 誘發되는 劣等感과 이에 대한 反抗적인 內面 充棟을 家庭과 學校 또는 社會에 대하여 憎惡

20) 慎鎮揆, 『犯罪學兼 刑事政策(刑事司法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7), p.365.

와 拒否로 나타내게 되어 社會不適應現象이 나타나게 된다.²¹⁾

3) 情緒와 犯罪

靑少年들의 欲求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欲求不滿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犯罪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힐리(Healy)와 브로너(Bronner)는 犯罪少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情緒的 障礙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²²⁾.

- ① 拒絶당하고 있다거나 剝奪당하고 있고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 ② 여러 가지 면에서 欲求不滿을 강하게 느낀다.
- ③ 家庭生活, 學校, 交友關係에서 實際적으로나 想像적으로 심한 劣等感を 지니고 있다.
- ④ 家庭不和, 父母의 非行, 家庭生活 등에 불만이 많다.
- ⑤ 동기간의 嫉妬感이나 差別待遇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 ⑥ 深層의 葛藤에서 연유된 착잡한 불행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 ⑦ 意識的이던 無意識的이던 罪惡感을 가진 경우에 直接・間接으로 犯罪를 誘發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4) 模倣理論(Modeling Theory)

반두라(A. Bandura)나 월터스(R. Walters)같은 사람들은 犯罪의 社會的 學習理論을 통해 模倣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靑少年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인물행동을 模倣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攻撃的, 逸脫的 行動은 그러한 모델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델의 그

21) 警察大學 附設 搜查幹部研修所, 『前掲書』, pp.40~41.

22) 『上掲書』, pp.41~42.

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거나 보상받을 때 더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模倣性이 犯罪學習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經驗的 研究들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²³⁾

5) 認知發達理論(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피아제(Piajet)가 중심이 된 이 이론은 인간의 발달에 일정한 단계와 순서가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개인이 정상적인 환경 아래에서 그의 發達的 欲求(developmental need)를 충족시키고 또 각 단계에서의 發達 課業(developmental task)을 완수할 때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며, 靑少年期에 있어서 發達課業은 身體的·性的 發達, 同僚와의 새로운 關係, 父母로부터의 情緒的인 獨立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發達的 欲求가 充足되지 못하고 發達課業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靑少年은 犯罪를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犯罪는 社會環境이나 集團의 規範에 대적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3. 生物學的 原因論

犯罪遺傳說은 주로 刑事政策學者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生來性犯罪人說과 隔世遺傳說이 있다. 犯罪人類學을 창설한 롬브로조(Lombroso)는 生來性 要因에 의하여 犯罪者로 결정되어질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生物學的, 遺傳的 立場에서의 고찰을 통해 犯罪的 特性和 身體的인 面과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주목을 하였다. 특히 犯罪要因에 대한 科學

23) Albert Bandura,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pp. 118~203.

的, 實證的 研究는 犯罪研究에 크게 기여하였다.

1) 生來的 犯罪人說

롬브로조(Lombroso)는 이탈리아 도리노 구치소의 의무관으로 있는 동안 1876년에 生來性犯罪人說을 주장하여 범죄인에게는 외면적으로 알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 徵表가 있어 범죄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태내로부터 범죄인이 될 숙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犯罪人定型說을 주장하면서 習慣性犯罪者와 重大犯罪者를 표본으로 頭蓋骨이나 身體의 各 部位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요약하였다.

- ① 머리부분의 특징: 예각적인 앞 이마, 안면각의 예각성, 좌우의 불균형, 두발의 조밀함, 치열의 부정비
- ② 기타 身體的, 生理的 異常: 대뇌회전의 단조, 체모의 부족, 통증상실, 미각예민, 신경의 이상 등
- ③ 精神的 異常: 道德的 感情의 爆發性, 自制力 缺如, 知能低級, 倦怠感 등
- ④ 社會的 特徵: 과도한 제스처의 사용, 화려한 화술에 탐닉, 주색과 도박에 심취, 무생물의 인격화 등

2) 隔世遺傳說

범죄자는 인류의 隔世遺傳이며, 生來學的 特徵은 많은 점에서 原始人과 유사한 것으로 인간발달의 원시야만적인 단계로의 재현이라고 한다. 즉, 범죄인은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현대에 생산된 시대착오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롬브로조(Lombroso)는 隔世遺傳의 설명으로서 癩病을 들고 있다.

그러나 롬브로조(Lombroso)가 열거한 수많은 身體的 特徵에는 의미가 없고 그것과 精神的 異常과의 사이에도 본질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그가 주장한 生來性犯罪人說은 부정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고링(Charles B. Goring)이 저명한 통계학자 비어슨(Biason) 등의 협력을 얻어 약 3,000명의 累犯受刑者와 正常人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롬브로조(Lombroso)의 학설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했다.

그 후 롬브로조(Lombroso)의 生來性犯罪人說의 부활은 하버드대학의 인류학자 후튼(E. A. Hooton)에 의하여 시도되어 13,173명의 男子 受刑者와 3,203명의 대조군에 대하여 33개의 측정사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19개의 사항에 대하여 有意性이 있었다고 하나 이 연구도 대조군의 선택기준이 분명치 않은 결점이 있었다.

어쨌든 롬브로조(Lombroso)의 生來性犯罪人說은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 될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에 관한 제반 社會學的, 心理學的, 그리고 生物學的 理論들을 검토해본데 이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靑少年犯罪를 일으키는 個人的, 心理的, 要因에 관해서는 靑少年期의 心理的 特性和 관련해서 여러 가지 性格的, 心理的 要因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각각이 항상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要因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즉, 情緒的 不安定, 反抗心, 不安感 등도 靑少年犯罪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犯罪의 原因으로서 청소년 개개의 個人的, 心理的 要因과

遺傳的 要因도 고려하기는 하되 근본적으로는 그 社會環境的要素가 青少年犯罪를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第3章 青少年犯罪의 實態 및 問題點

青少年犯罪가 오늘날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青少年問題는 어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앞장에서 青少年犯罪의 理論과 類型을 통해 青少年犯罪의 原因도 社會的, 環境的, 生物學的, 精神分析學的 側面에서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青少年犯罪發生要因도 遺傳的, 心理的, 社會的要因을 통해 家庭環境的, 敎育環境的, 社會環境的 要因에 의해 發生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실제 青少年犯罪의 實態 및 問題點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1節 青少年犯罪의 實態

1. 發生現況

오늘날 現代社會의 特徵은 급속한 都市化, 産業化, 開放化, 多元化, 情報化의 時代의 변화에 따라 青少年犯罪의 增加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青少年犯罪의 特性도 조직화, 집단화, 누범화되어 갈수록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青少年犯罪의 전반적인 흐름도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青少年犯罪의 年度別 發生現況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 - 1> 靑少年犯罪 年度別 發生現況

(단위 : 명)

연도별 / 구 분	계	형 법 범	특 별 범 범
1991	54,066	42,088	11,978
1992	55,706	42,540	18,966
1993	66,872	49,684	17,188
1994	71,693	49,807	21,886
1995	83,652	55,913	27,739

자료: 경찰청, 『범죄분석(1991-1995)』, 1995.

靑少年犯罪의 1991년도 발생상황은 총 54,066명이며, 그 중 형법범은 42,088명이고, 特別法犯은 11,978명으로 나타났고, 1993년도는 靑少年犯罪者가 66,872명으로 그 중 刑法犯이 74.3%인 49,684명이고, 特別法犯이 17,188명으로 25.7%이며 1995년도에는 靑少年犯罪者가 83,652명으로 刑法犯이 55,913명이며 特別法이 27,739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刑法犯, 特別法犯이 모두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2. 前科別 現況

<표 3 - 2> 1994년도 靑少年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단위: 명)

죄 종 별		계
총 범 죄 (합계)		71,693
형 법 범 (계)		49,807
강 력 범	계	2,752
	살 인	29
	강 도	2,050
	강 간	637
	방 화	36
절 도 범		18,748
폭 력 범		26,046
지 능 범		973
풍 속 범		99
특 별 범 범 (계)		21,886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靑少年犯罪者의 전과별 현황을 <표 3-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도 전과별 현황을 보면, 총범죄는 71,693명으로 이들중, 형법범이 49,807명인데 그중 강력범이 2,752명, 절도범이 18,748명, 폭력범 26,046명 기타 등이 1,072명과 특별범법자는 21,886명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靑少年犯罪의 전과자는 폭력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표 3 - 3> 1995년도 靑少年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단위 : 명)

죄 종 별		계
총 범 죄 (합계)		83,652
형 법 범 (계)		55,912
강 력 범	계	1,922
	살 인	25
	강 도	1,476
	강 간	383
	방 화	38
절 도 범		19,636
폭 력 범		32,053
지 능 범		1,159
풍 속 범		106
특 별 범 범 (계)		27,739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5.

1995년도 靑少年犯罪者의 前科別 現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總犯罪者는 83,652명으로 이중 형법범은 55,912명인데 그 중 강력범은 1,922명, 절도범은 19,636명, 폭력범은 32,053명, 기타 1,265명이고 특별법범은 27,739명으로 分析되며 1994년도에 비해 형법범과 특별법범도 갈수록 增加하고 있고 특히, 형법범중 폭력범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增加하고 있는데 이 표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폭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3. 犯罪原因

靑少年犯罪가 매년 增加하는 것으로 볼 때, 그 犯罪原因도 <표 3-4>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 - 4> 靑少年犯罪의 原因別 現況

(단위 : 명)

연도별 원인별	계	생활 비 충당	유혹 비 충당	허영 사치 심	사 행 심	원한 분노	가 정 불 화	유혹	우연	마약 각성제 충동	취중	기타
1992	55,706 (100%)	684 1.2	2,093 3.8	925 1.7	707 1.3	826 1.5	45 0.1	588 1.1	44,909 80.6	79 0.1	2,794 5.0	2,055 3.7
1993	66,872 (100%)	497 0.7	2,846 4.3	710 1.1	672 1.0	760 1.1	53 0.1	1,019 1.5	54,608 81.7	105 0.1	3,245 4.9	2,357 3.5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1991-1995)』, 1995.

1992년도의 靑少年犯罪를 原因別로 分析해보면 우연한 범죄가 전체의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술취한 상태가 5.0%, 유혹비 충당을 목

적으료가 3.8%로 나타났다. 1993년도는 靑少年犯罪 原因중 우연한 범죄가 81.7%, 술취한 상태에서는 4.9%, 유흥비 충당목적으로 4.3%, 기타 3.5%로 나타나 계속해서 靑少年犯罪가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을 볼 때 靑少年犯罪가 대부분 우연한 犯罪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認識하면서 靑少年犯罪 原因除去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 靑少年犯罪 原因을 분석해보면, 우발적 범죄는 전체범죄의 25.7%, 부주의로 인한 범죄는 15.2%, 호기심으로 9.6%, 유흥비로 7.6%, 기타 34.4% 등으로 나타났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범은 우발적인 범죄가 33.9%, 호기심으로는 10.7%, 기타 25.3%로 나타났고, 특별법범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범죄가 47.6%, 호기심으로는 7.3% 우발적 범죄는 6.9%, 기타로는 32.8%로 나타났다.

<표 3 - 5> 1994년 靑少年犯罪 原因別 現況

(단위 : 명)

원인 연도 별	계	이 유							사 행 심	보 복	가 정 불 화	호 기 심	유 혹	우 발 적	현 실 불 만	부 주 의	기 타
		소 계	생 활 비	유흥 비	도 박 비	허영 사치	치 부	기 타									
계	71,693 100.0%	12,279 17.1	742 1.0	5,446 7.6	10 0.0	1,105 1.5	139 0.2	4,838 6.8	697 1.0	1,056 1.5	82 0.1	6,903 9.6	772 1.1	18,405 25.7	855 1.2	10,865 15.2	19,779 27.6
형 법 범	49,807 100.0%	11,564 23.2	654 1.3	5,417 10.9	10 0.0	1,060 2.1	129 0.3	4,294 8.6	626 1.3	1,055 1.3	79 0.2	5,312 10.7	611 1.2	16,892 33.9	605 1.2	459 0.9	12,604 25.3
특 별 법 범	21,886 100.0%	715 3.3	88 0.4	28 0.1	- 0.0	45 0.2	10 0.1	544 2.5	71 0.3	1 0.0	3 0.0	1,591 7.3	161 0.7	1,513 6.9	250 1.1	10,406 47.6	7,175 32.8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표 3 - 6> 1995년 靑少年犯罪 原因別 現況

(단위 : 명)

원인 연도 별	계	이 욕							사 행 심	보 복	가 정 불 화	호 기 심	유 혹	우 발 적	현 실 불 만	부 주 의	기 타
		소 계	생 활 비	유 홍 비	도 박 비	허 영 사 치	치 부	기 타									
계	83,652 100.0%	13,664 16.3	630 0.8	5,480 6.6	15 0.01	1,158 1.4	205 0.2	6,176 7.4	709 0.8	952 1.1	79 0.1	8,609 10.3	790 0.9	21,482 25.7	849 1.0	14,051 16.8	22,467 26.9
형 법 범	55,913 100.0%	12,867 23.0	551 1.0	5,459 9.8	15 0.02	1,080 1.9	194 0.3	5,568 10.0	677 1.2	930 1.7	74 0.1	6,128 11.0	572 1.0	19,367 34.6	642 1.1	654 1.2	14,002 25.0
특 별 법 범	27,739 100.0%	797 2.9	79 0.3	21 0.1	- 0.0	78 0.3	11 0.03	608 2.2	32 0.1	22 0.1	5 0.01	2,481 8.9	218 0.8	2,115 7.6	207 0.7	13,397 48.3	8,465 30.5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5.

1995년도 靑少年犯罪 原因을 <표 3-6>에서 살펴보면, 靑少年犯罪의 원인으로서는 우발적 25.7%, 이욕 16.3%, 부주의 16.8%, 호기심 10.3%, 보복 1.1%, 현실불만 1.0%순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범으로서 靑少年犯罪 原因은 偶發的 犯罪가 34.6%, 호기심으로 11.0%, 유흥비 마련으로 9.8%, 기타 25.0%로 나타났다. 特別法犯으로서 靑少年犯罪 原因은 부주의로 48.3%, 호기심으로 8.9%, 우발적으로 7.6%, 기타 30.5%로 나타났는데 이 표에 근거하여 원인을 분석하여보면 아직도 靑少年犯罪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靑少年期の 特性을 보여준다는 側面에서 처벌보다는 善導 및 啓導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4. 家族狀況

<표 3 - 7> 1992년 靑少年犯罪 家族狀況別 現況

(단위 : 명)

가족 상황 별 죄 종 별	계		미 혼														기 혼	
			실(양)부모		결 손 부 모										무부모			
					소 계		계부 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모 무부	계부 무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계	55,706	100	44,750	80.3	5,080	9.1	105	359	265	1,013	3,215	111	12	504	0.9	5,372	9.6	
형법범	42,540	100	34,380	80.3	3,918	9.2	80	279	217	817	2,429	88	8	387	0.9	3,855	9.1	
특별 법범	13,166	100	10,370	78.8	1,162	8.8	25	80	48	196	786	23	4	117	0.9	1,517	11.5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2.

1992년도 靑少年犯罪者 家族狀況을 <표 3-7>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靑少年犯罪者를 家族狀況別로 보면 실(양)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가 80.3%, 계부이거나 계모 등의 缺損家庭의 出身이 9.1%, 무부모 0.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실부모의 슬하에 있는 靑少年犯罪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 8> 1993년 靑少年犯罪 家族狀況別 現況

(단위 : 명)

가족 상황 별 죄 종 별	계		미 혼														기 혼	
			실(양)부모		결 손 부 모								무부모					
					소 계		계부 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모 무부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인원	비 율
계	66,872	100	54,217	81.1	6,149	9.2	193	404	382	1,456	3,568	137	10	621	0.9	5,885	8.8	
형법범	49,684	100	40,510	81.6	4,560	9.2	133	309	288	1,138	2,585	99	8	468	0.9	4,146	8.3	
특별법범	17,188	100	13,707	79.8	1,589	9.2	60	95	94	317	983	38	2	153	0.9	1,739	10.1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3.

1993년도 靑少年犯罪 家族狀況을 <표 3-8>과 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靑少年犯罪者를 家族狀況別로 보면 실(양)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가 81.1%, 계부이거나 계모 등의 결손가정의 출신이 9.2%이며, 기혼 8.8%, 무부모 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 9> 1994년 靑少年犯罪 家族狀況別 現況 (단위 : 명)

가족 상황 별 죄 종 별	계		미 혼											기 혼			
			소 계		결 손 부 모											무 부모	
					실부모	계부 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모 무부	계부 무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71,693	100	70,001	97.6	60,627	177	471	2,287	287	5,189	32	29	902	1,692	2.4		
형법 범	49,807	100	49,099	98.6	42,072	124	399	1,815	235	3,723	27	25	679	708	1.4		
특 별 법 범	21,886	100	20,902	95.5	18,555	53	72	472	52	1,466	5	4	223	984	4.5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4.

1994년도 靑少年犯罪者 家族狀況을 <표 3-9>과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靑少年犯罪者를 가족상황별로 보면 실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가 84.6%, 계부이거나 계모 등의 결손가정의 출신이 11.7%이며, 기혼 자혼인관계 2.4%, 무부모 1.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실부모 슬하에 있는 靑少年犯罪가 상당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 10>

1995년 靑少年犯罪 家族狀況別 現況

(단위 : 명)

가족 상황 별 죄 종 별	계		미 혼											기 혼	
			소 계		결 손 부 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실부모	계부 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모 무부	계부 무모	인원
계	83,652	100	81,775	97.8	70,618	261	507	2,884	307	5,985	29	90	1,094	4,877	2.2
형법 범	55,913	100	55,144	98.6	47,156	162	414	2,213	225	4,090	24	65	795	769	1.4
특별 법범	27,739	100	26,631	96.0	23,462	99	93	671	82	1,895	5	25	299	1,108	4.0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5.

1995년도 靑少年犯罪者 家族狀況을 <표 3-10>과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靑少年犯罪者를 家族狀況別로 보면 실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가 84.4%, 계부이거나 계모 등의 결손가정의 출신이 12.0%이며, 기혼자 혼인관계 2.2%, 무부모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표에 의하여 범죄원인을 分析해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期에는 화목하고 아늑한 가정의 중요성과 훌륭한 가정교육을 통해서만이 靑少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敎育程度

敎育이 靑少年 犯罪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에 對해서 여러가지로 論議되어 왔다. 敎育은 自制力과 分別力을 發達시키고 犯行을 抑制하는 作用을 한다는 見解가 있는가 하면 敎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社會에 대한 批判力이 發達하여 社會不條理에 對한 反抗心理가 作用하여 犯行을 計劃하는 수가 있다는 見解도 있다. <표 3-11>에 의하면 1995

年度 少年犯罪者の 教育程度를 보면 高等學校 卒業者 가 56.5%로서 가장 많고 中學校 졸업자, 國民學校 卒業者の 順이다.

1991年度에는 國民學校 卒業者가 4.5%였으나 점점 減少하여 1995年度에는 2.3%이고, 中高等學校 卒業者는 毎年 增加하여 1995年度에는 무려 88.3%에 達하고 있으며, 1991年の 82.4%보다 5.9% 增加하였다.

아래표에 根據하여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분석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學校教育의 不實 및 지나친 入試爲主의 成績主義 教育으로 人性教育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表 3 -11> 靑少年犯罪의 教育程度別 現況

(단위 : 명)

연 도	계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1991	102,537 (100)	327 (0.3)	4,571 (4.5)	30,260 (29.5)	54,270 (52.9)	3,708 (3.6)	9,401 (9.2)
1992	99,301 (100)	278 (0.3)	4,190 (4.2)	25,310 (25.5)	53,560 (53.9)	2,955 (3.0)	13,008 (13.1)
1993	110,604 (100)	164 (0.1)	3,807 (3.4)	34,097 (30.8)	60,392 (54.6)	2,905 (2.6)	9,239 (8.4)
1994	108,342 (100)	169 (0.2)	3,187 (2.9)	33,929 (31.3)	61,108 (56.4)	4,190 (3.9)	5,759 (5.3)
1995	124,244 (100)	177 (0.1)	2,896 (2.3)	39,480 (31.8)	70,199 (56.5)	5,458 (4.4)	6,034 (4.9)

資料 : 문화체육부, 『靑少年백서』, 1996, p.414.

6. 警察 處理結果

現代社會의 發展과 變化속에 靑少年犯罪의 증가에 따라 靑少年犯罪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 12> 1993년 警察 處理結果

(단위 : 명)

처리결과 과별 죄종별		계	기 소			불 기 소						이첩	소 년 원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협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계	총 범죄자	1,500,707 100.0%	1,164,774 77.6	154,454 10.3	1,010,320 67.3	333,101 22.2	1,240 0.1	10,875 0.7	90,844 6.1	1,598 0.1	228,544 15.2	2,106 0.1	726 0.1
	청소년 범죄자	66,872 100.0%	60,219 90.1	16,103 24.1	44,116 66.0	6,076 9.1	38 0.1	40 0.1	760 1.1	932 1.4	4,306 6.4	25 0.04	552 0.8
형 법 범	총 범죄자	871,755 100.0%	630,431 72.3	122,962 14.1	507,469 58.2	239,539 27.5	719 0.1	9,117 1.0	73,074 8.4	1,346 0.2	155,283 17.8	1,129 0.1	656 0.1
	청소년 범죄자	49,684 100.0%	44,624 89.8	11,685 23.5	32,939 66.3	4,526 9.1	22 0.04	32 0.1	586 1.2	851 1.7	3,035 6.1	21 0.04	513 1.1
특 별 법 범	총 범죄자	628,952 100.0%	534,343 85.0	31,492 5.0	502,851 80.0	93,562 14.9	521 0.1	1,758 0.3	17,770 2.8	252 0.1	73,261 11.6	977 0.1	70 0.01
	청소년 범죄자	17,188 100.0%	15,595 90.7	4,418 25.7	11,177 65.0	1,550 9.0	16 0.1	8 0.05	174 1.0	81 0.5	1,271 7.4	4 0.02	39 0.3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3.

1993년도의 靑少年犯罪者에 대한 처리결과를 <표 3-12>에서 살펴보면 기소율은 90.1%로 총범죄자 기소율 77.6%보다 12.5%가 높으며 그 중 형법범 기소율이 89.8%로써 특별법범 기소율 90.7%보다 0.9%가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범은 靑少年犯罪起訴율은 89.8%, 총범죄기소율은 72.3%에 비해 17.5%가 높으며, 특별법범은 청소년범죄 기소율이 90.7%이고 총범죄자 기소율은 85.0%에 비해 14.3%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 13> 1995년 警察 處理結果

(단위 : 명)

처리결과 과별 죄종별		계	기 소			불 기 소							이첩	소 년 원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기 소 유 예	기소 중지	혐의없 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공소 보류		
계	총	1,476,151	1,063,151	127,788	935,756	408,892	209	18,637	154,946	1,512	233,184	404	2,891	824
	범죄자	100.0%	72.0	8.7	63.4	27.7	0.01	1.3	10.5	0.1	15.8	0.02	0.2	0.1
	청소년 범죄자	83,652	76,045	13,820	62,225	7,249	13	112	1,431	718	4,969	6	39	319
		100.0%	90.9	16.5	74.4	8.7	0.01	0.1	1.7	0.9	5.9	0.007	0.04	0.4
형 법 범	총	643,139	480,126	81,270	398,856	160,268	115	15,696	130,068	1,138	13,070	181	2,177	568
	범죄자	100.0%	74.7	12.6	62.0	24.9	0.01	2.4	20.2	0.2	2.0	0.02	0.3	0.1
	청소년 범죄자	55,913	53,397	11,356	42,041	2,193	9	84	1,205	625	269	1	29	294
		100.0%	95.5	20.3	75.2	3.9	0.01	0.2	2.2	1.1	0.5	0.001	0.1	0.5
특 별 범	총	833,012	583,418	46,518	536,900	248,624	94	2,941	24,878	374	220,114	223	714	256
	범죄자	100.0%	70.0	5.6	64.5	29.8	0.01	0.4	3.0	0.04	26.4	0.02	0.1	0.03
	청소년 범죄자	27,739	22,648	2,464	20,184	5,056	4	28	226	93	4,700	5	10	25
		100.0%	81.6	8.9	72.8	18.2	0.01	0.1	0.8	0.3	16.9	0.01	0.03	0.1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5.

<표 3-13>에서 1995년도의 靑少年犯罪者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기소율은 90.9%로 총범죄자 기소율 72.0%보다 18.9%가 높으며 그 중 형법범 기소율이 95.5%로써 특별법범 기소율 81.6%보다 13.9%가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범은 총범죄자 기소율이 74.7%이고 청소년범죄 기소율은 95.5%를 차지하고 있어 20.8%가 높은 편이며, 특별법범은 청소년범죄자 기소율이 81.6%로 총범죄자 기소율 70.0%보다 11.6% 높아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靑少年犯罪의 實態에서 나타난 問題點

앞장에서 靑少年犯罪 實態를 통해서 오늘날 靑少年犯罪도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도 多樣化되고 있고, 靑少年犯罪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靑少年犯罪 原因도 偶發的, 衝動的, 不注意로 나타나고 있으며 靑少年犯罪도 家族關係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靑少年犯罪도 교육정도와 생활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이러한 靑少年犯罪 發生實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家庭的 側面, 教育的 側面, 社會環境的 側面, 國家的 側面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家庭的 側面の 問題

家庭은 靑少年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社會集團이고 청소년의 일상 활동과 관심의 본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은 성인보다 훨씬 환경감수성이 강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특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지 가족 관계가 자녀교육에 유해환경인 경우 자녀의 인격은 범죄에 친화성이 있는 방향으로 형성케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家庭이란 곳이 精神的, 肉體的으로 미완성한 청소년기에 잘 보호, 양육되고 더욱 건전하게 육성되어 社會活動의 적응을 學習하는 장소로써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다른 社會集團도 대신할 수 없는 우월적地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潛在的으로 범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억제기구로써의 性格과 機能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家庭에서 결함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가족 그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家庭이 갖는 犯罪抑制機能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人格形成에 불량한 影響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

지르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쿨리(E. H. Cooley)는 “家族集團은 소년의 人間性을 形成시키는 원본적인 집단이다”는 말로 家庭과 犯罪가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말하여주듯이 가정은 소년의 人格을 형성시키는 동시에 또한 社會秩序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機能을 수행하는 組織體이다. 이러한 家庭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불량 가정이 되는데 이에 缺損家庭, 貧困家庭, 施設家庭 등이 그것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태도와 자세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시킬수도 있으며 또 犯罪를 誘發시킬수도 있는데 父母 態度의 잘못으로 靑少年의 非行을 誘發시키는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자녀에 무관심한 아버지와 어머니 혼자서 훈계를 하는 경우와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무관심한 방임감이 지나쳐 자녀의 선악을 분별하여 주지 못하는 父母, 둘째, 잦은 부부싸움으로 家庭에서 子女와 對話가 없는 父母, 셋째, 야단과 질책으로 일관된 생활 속에서 자녀의 좋은 점을 칭찬하여 주지 않는 父母와 학교성적 하나에다 基準을 두고 評價하는 父母, 넷째, 가풍이나 전통적 家庭의 規律이 없고 父母의 生活이 無秩序한 家庭, 다섯째, 잦은 전출과 이주가 심한 家庭, 여섯째, 자녀의 고심이나 당면 問題를 消極的인 자세로 傍觀하며 일류학교 진학 등 지나친 기대를 갖고 督促하는 父母등을 들수있는데, 엄격한 아버지의 위엄있는 規律에 秩序가 유지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게 生活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부모를 가진 가정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父母의 그릇된 態度는 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障礙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靑少年犯罪는 쉽게 發生하고

24) 김동철, “靑少年 犯罪의 環境的 要因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동국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p. 47-48.

있는 것이다.²⁵⁾

1) 家庭的 缺陷과 靑少年犯罪

家庭的 缺陷이 범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하여는 특히 미국의 사회학적 이론을 통하여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犯罪一般論을 하나의 理論的 가설에 통용시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론의 일반화를 위하여 청소년범죄에 공통된 家庭的 缺陷 내지 要因을 논의하겠다. 靑少年犯罪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 가정적 결함의 유형으로는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도덕가정, 갈등가정, 시설가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손가정과 빈곤가정만을 한정적으로 논하겠다.

缺損家庭(the broken home)이란 양친 또는 그 어느 일방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인으로는 사별, 별거, 유기, 실종, 수형, 장기부재 등을 말함이 보통이나, 양친이 모두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도 결손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교양이나 학력의 부족, 정서 발달의 장애, 가정이 좋지 못한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 가정보다 청소년을 범죄로 몰아 넣을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범죄 중 결손가정 출신자의 比率이 낮아져 종래의 學者들의 주장과는 달리 缺損家庭의 문제가 그 의미를 喪失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범죄 關聯性과는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결손가정은 缺損 그 자체가 問題가 아니라 결손이 차지하는 가정적 기능의 결함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위 기능적

25) 정하성, 『靑少年 理論』, (서울 : 백산출판사, 1989), p. 123.

손실가정이라는 측면에서 研究되어야 할 問題이다.

貧困家庭의 경우 빈곤 자체는 도덕적으로 불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제적 빈곤은 사람의 인격형성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빈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非行動機도 生活費 調達을 위한 경우가 점차로 減少하고 있는 반면, 유흥비 마련, 우연 등은 점차로 증가하는 趨勢이며 家庭貧困으로 인한 범죄 유발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간접적인 영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 불안, 열등감 등을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의 현실화를 쉽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부적응자의 가정으로 구성된 부도덕 가정(immoral family)이나, 가정간의 감정, 이해, 가치관 등 심리적 갈등이 있는 모순가정(conflict family), 고아원 등 기타 아동 양육시설이 가정역할을 하는 시설가정(institutional home)등이 청소년범죄 요인이 있는 가정으로 들 수 있다.²⁶⁾

2) 家庭教育

Sheldon과 Elenoar Glueck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훈육법,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및 가정의 결합도 등을 소년범죄를 유발하는 5대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²⁷⁾, 家庭教育은 그만큼 청소년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家庭教育은 부모가 가지는 가치관의 방향으로 자녀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① 가정교육의 일관성 ② 가정교육의 기술 ③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정도 ④ 가정교육의 이면으로

26) 정하성, 『前掲書』, p. 124.

27) Sheldon & Elenoa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Commonwealth Fund, 1950, pp. 122-123.

서의 부모의 권위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없이 때와 장소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거나, 일방적인 명령, 가정교육에 무관심한 경우 또는 부의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비행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소년과 非行靑少年과의 가장 큰 차이가 父母의 子女에 대한 훈육태도에 있다고 보는 Burt에 의하면 父母의 子女에 대한 無關心, 子女를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꾸짖을 수 있는 父母의 身體的, 知的, 道德的 缺陷, 또는 父母의 부재로 인한 자녀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非行少年에게서 정상소년에 비교하여 6.9배 가량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며, 적절치 못한 訓育方法이 가정의 빈곤보다도 1,000배나 더 청소년비행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²⁸⁾

3) 家出과 靑少年犯罪

靑少年犯罪에 影響을 주는 경우는 家庭的 要因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에 소년은 그러한 家庭내의 차가운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고 가정에 대한 애착이 점차 냉각되어 버린다. 父母가 子女에 대하여 愛情을 거부, 부모와 자녀간에 價値觀의 심각한 對立, 父母의 家庭教育에 대한 關心이 없는 경우 靑少年은 가정을 뛰쳐나가 거리를 방황하며 犯罪에 빠지게 될 危險性이 크게 된다. 靑少年의 家出動機로는 家庭不和, 親子間의 葛藤, 부형으로부터의 질책, 실부모에의 사모, 양자신분의 발각 등 가정간의 관계와 본인의 행동불량, 학업실패, 구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⁹⁾

28) 윤덕중, 『犯罪와 靑少年非行學』, 서울 : 박영사, 1988, p. 126.

29) 정영석, 『前揭書』, p. 133.

2. 教育制度的 측면의 問題點

靑少年들을 좌절에 몰아 넣고 犯罪에까지 밀어 넣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學校와 教育制度를 들 수 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學校는 社會化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社會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성공에의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게 된다. 우리 사회의 입시위주의 教育制度는 불가피하게 탈락 부적응 학생 등을 양산시키고 있는데 이는 문제 靑少年의 構造的 生産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대도시 중학생이 50%가 지원하는 고교입시에서, 또 고등학생의 70%는 대학입시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체계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처럼 社會의 價値가 다원화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있어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을뿐더러 대학을 가지 않고서는 다른 출세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막혀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家庭 형편상 學校에 進學할 수 없거나 學校에서 잘 適應하지 못하여 성적이 나쁜 청소년들은 이런 좌절 때문에 소년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³⁰⁾

E. H. Sutherland도 학교교육과 靑少年 犯罪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성인의 생활을 위한 훈련에 중요한 구실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 學校이므로 종종 범죄 내지 非行은 “學校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하여 制度教育으로서의 學校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길의 교수는

30) 심영희, “靑少年 暴力化 實態와 對策”, 『20회 청소년 지도서 심포지움』, 1990. 4. 20. pp. 54-55.

도시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 程度別 犯罪를 장정의 학력별 구성과 비교한 결과 범죄자에는 불취업자와 국민학교 중퇴자가 현저하게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敎育程度가 낮은 사람에게서 범죄인이 많다는 사실은 역시 “교육부족”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³¹⁾

敎育制度의 問題이외에 學校에서의 敎育方式과 교사-학생간의 관계도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주는 요인이 된다. 學校에서의 敎育方式은 千篇一律的으로 대단위 교실에서 주입식 수업일 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를 위한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한창 성장하고 活動하고 싶어하는 나이의 靑少年들을 억지로 敎室에 붙잡아 두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좌절을 주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학생수의 과다로 인해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미명 아래 체벌에 依存하는 경우가 흔하다. 敎師들의 체벌이 제도화 됨으로써 훈계를 위한 “사랑의 매”로서의 성격을 잃어 버린채 학생의 반발과 반항심만 불러 일으키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³²⁾

오늘날 靑少年의 暴力化 등 靑少年 犯罪가 深化되는 原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체벌의 역효과가 아닌가 싶다. 매를 맞고 자란 청소년이 폭력소년이 되고 폭력청소년을 체벌로 다스리면 이는 또 다른 청소년 폭력 등 청소년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³³⁾ 이와 같이 비인격적인 교사-학생간의 관계는 불가피한 학교의 환경적 여건하에서의 학생이 다양한 개성이나

31) 김동철, 『前掲論文』, pp. 55-56.

32) 김동철, 『前掲論文』, p. 57.

33) 심영희, 『前掲書』, pp. 55-56.

의사가 무시된 채 실시되는 학력위주의 학교교육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학교성적을 단일척도로 삼아 전도된 전인적 평가방법을 택하게 됨으로써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며,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러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의 관계는 개인의 지적 능력이 곧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률로 둔갑되어서 소년범죄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³⁴⁾

3. 社會環境的 側面의 問題

靑少年犯罪의 社會環境的 要因은 文化葛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地域的 環境, 또래 集團의 相互作用 등으로 나누어 보겠다.

1) 文化 葛藤과 靑少年 犯罪

고도의 産業社會의 發展에 따른 급격한 社會的 變化는 사회자체의 내적 갈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心的 葛藤을 유발시키고 종적인 인간관계를 횡적인 人間關係로 變化시켜 세대간의 不信을 빚어 내었으며 관례와 관습사상과 宗教의 變化는 道德的 弛緩과 理念的 상충 등을 가져왔다.

文化葛藤이란 社會的 價值, 이해 및 規範 등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화가 없든지 혹은 차질이 생기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 즉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의 충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社會的 價值, 이해 및 規範의 衝突은 때로는 文化의 進展을 特徵化하는 社會的 文化의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 行爲規範을 이입함으로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

34) 윤덕중, 『前掲書』, p. 122.

히 現代 産業社會의 社會的 分화과정은 무수한 사회집단을 발생케하고 이러한 집단상호간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 이해에 관한 상호의 몰이해 또는 오해로부터 갈등국면은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증폭된다. 사회분화의 부산물로서 文化葛藤은 즉, 同質性으로 잘 體系화된 文化위에 이질적으로 잘 綜合되지 않은 형태로 이행한다든지 다시 해체하여 가는 과정에는 가치규범의 부조화, 충돌 등이 일어나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³⁵⁾

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TV, 영화, 연극 등 大衆媒體는 大衆의 文化發達과 향상에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오늘날 社會生活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농촌 연결화와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 해설, 교육, 오락 등의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商品化되어 선정적으로 될 때에는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불량화 내지 비행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물은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개인의 인격, 특히 사회성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저속한 서적이나 참혹한 탐정소설, 음란한 문학 등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영화는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여 성적범죄를 야기시키는 등 직접적인 범행의 촉진작용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논리관의 저하와 범죄적 암시를 가져오게 한다. 인쇄물 특히 신문의 범행동기나 누범의 전과작용도 무시할 수 없

35) 정하성, 『前掲書』, p.124.

다고 말한 E. H. Sutherland는 “범죄기사가 자주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의 효과는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의 수범에 관한 보도는 어떤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착상을 얻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수범을 반복하는 등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Joseph T. Klapper는 暴力과 犯罪를 포함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內容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① 일반적으로 유해하다. ② 직접 모방한다. ③ 범죄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도 특수상황에서는 폭력적 또는 범죄적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준다. ⑤ 인간생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⑥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 충동을 준다는 것이다.

靑少年들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인적 사고의 세계, 갈등, 곤란성에 접촉하고 있다. 또한 매스컴으로 인하여 靑少年의 社會化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빠른 것은 社會的 問題인 동시에 교육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³⁶⁾ 즉, 조숙이 犯罪의 原因으로 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각 매스미디어간의 競爭的 激流 속에서 광고 수입의 증대, 판로의 확장을 노린 나머지 극단적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선정적인 자극은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 속의 범죄적 폭력적 내용들은 이른바 “범죄학교(a school for delinquency)”가 되고 “방아쇠 효과(triggering effect)”를 가져와 靑少年 犯罪 유발에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³⁷⁾

36) 김동철, 『前掲論文』, pp. 59-60.

37) E.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p. 99-101.

3) 地域的 環境의 影響

現代都市는 일반적으로 관공서 지역, 상업 지역, 유흥가 지역 및 주택 지역 등으로 거의 구획되어 있으며 빈민층의 주거지 분포도도 이에 상응하게 되어 있다. 도시의 虞犯地域은 農村과 都市의 틈바구니이며 農村과 都市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주거하는 社會의 황폐지에 비길 수 있고, 都市의 文化生活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이 모여들고 경제상의 빈곤과 문화상의 갈등이 만연된 불결한 빈민가 지대이다. 이와 같이 슬럼 지대는 정상적인 사회의 도덕의식과 사회통제가 직접 작용하지 않고 일반사회에서는 격리화된 지대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생활에 대한 適應性이 부족하며 이들에게 알맞은 제일의 生活環境 요건은 지나친 자극이 없는 지구로서 반사회적 행동과 비위생적 생활형태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또한 生活하는 住民들이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집단화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는 등 소외지역화 됨으로써 인한 청소년의 범죄발생률은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4)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과 공동범죄

(1) 또래 집단과 교우관계

靑少年期에 있어서의 交友關係는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또래의 동료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활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들은 친구간의 우정을 어떤 人間關係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親舊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는 등 비장한 결의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교우관계는 신의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강한 응결력을 가지고 맺어져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우정 속에 다져가는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장래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불량청소년집단에 가입하여 탈선과 비행을 일삼으며 그 속에서 잘못된 사고체계를 매개로 우정을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생활해 가는데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우정은 유지할 수 없다. 오늘날 靑少年犯罪 問題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범죄의 동기는 대부분 불량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교우관계는 자신의 파멸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불안케 하는 청소년범죄의 요인이 되므로 또래 집단끼리 교우관계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³⁸⁾

(2) 또래집단의 相互作用

비행의 요인을 고찰할 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겠지만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Shaw와 Mckay (1931)는 비행의 82.2%가 비행의 친구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청소년 비행은 집단화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일탈이론으로는 하위문화이론을 들 수 있는데, 비행자들의 집단(gang)에서 형성된 비행 친구와의 접촉은 말할 것도 없고(하위문화 이론), 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비행 친구와의 접촉 또한 비행을 유발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家庭과 學校에서의 愛着을 붙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불만을 토론하고 가정, 학교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며 열등감을 극복하고 共同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친구집단 또는 씨클의 吸引要因이고, 靑少年을 非行에 빠지게 하는 要因이

38) 김동철, 『前掲論文』, p. 60.

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놀고 즐길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유해한 環境에 接觸하기 쉽고 이에 따라 각종 犯罪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위 집단강화이론에서 糾明되듯이 혼자서 못
하던 짓도 여럿이 하면 책임회피 可能性, 集團이 주는 勇氣 등 때문에 가
능하다고 본다.³⁹⁾

이상에서와 같이 靑少年犯罪의 實態와 問題點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요즈음, 우리사회의 심각한 社會問題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청
소년범죄임을 본 장을 통해 點檢해 보았다. 특히, 靑少年犯罪의 發生도
해마다 增加하고 있으며, 犯罪類型의 多樣化, 犯罪原因의 偶發化, 衝動的,
不注意 등 靑少年前科者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에 學生
犯罪가 家族關係, 敎育程度, 生活程度 등에 따라 影響을 받았지만, 오늘날
에 이르러, 학생범죄의 행태가 교육정도, 생활정도, 가족상황에 영향을 크
게 관계없이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충동적 부주의로 나타난
것이 큰 變化라 할 수 있다.

4. 國家政策上의 問題點

1) 福祉政策

問題靑少年 뒤에는 問題家庭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常識的인 意味의
家庭에서 벗어난 問題家庭은 靑少年의 올바른 育成과 關聯하여 特別한
關心의 對象이 된다.⁴⁰⁾ 問題家庭이라 해서 別途의 概念規定이 있는 것이

39) 최차영, “靑少年非行의 原因과 그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한양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p. 69-70.

40) 정하룡, “靑少年 犯罪에 關한 研究-家庭環境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東國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pp.57-60.

아니나 大略的으로 貧困家庭・缺損家庭・缺陷家庭・施設家庭 등이 問題家庭의 範疇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 家庭에 대한 福祉強化策이 다음과 같이 失行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다.

(1) 貧困家庭 靑少年에 대한 保護로서 少年家長에 대한 就業斡旋 등이 貧弱하다.

(2) 缺損 및 不在家庭에 대해서 現況把握의 體系性이 약하고, 關係機關의 協助가 實質的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3) 缺損家庭 靑少年에 대하여는 家庭保護 委託事業이 貧弱하여 自發性이 약하다.

(4) 施設 受容靑少年에 대해서 實質적이고 積極性이 약하다.

(5) 家庭問題의 相談事業이 貧弱하다. 相談機關의 數가 不足하고 零細하여 地域的으로 서울에만 偏重되어 있다는 점이다. 各種 相談機關에 대한 一般人的 認識과 情報가 너무 不足하다는 점과 相談專門人力이 顯著히 不足하다는 점이다.

(6) 우리 社會가 靑少年 問題의 深刻性을 認識하지 못한 채 無關心, 放任 및 消極的인 姿勢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汎國民的인 健全家庭 育成을 위한 캠페인을 持續적으로 展開하여 적게는 각 家庭에서 크게는 國家에 이르기까지 效果的인 靑少年 善導 對策이 時急하다.

2) 政府의 靑少年全擔機構 設置

우리 生活水準과 經濟發展에 비추어 福祉施設이 不足하고 이로 말미암아 非行의 誘發要因이 되고 있는 實情이며 靑少年問題를 擔當하고 있는 機關도 不足한 실정이다. 현재 靑少年 問題를 擔當하는 國家機關으로는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靑少年 對策委員會가 設置되어 靑少年의 善

導 및 保護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의 定立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國務總理 企劃調整室이 그 事務局의 機能을 擔當하고 있다. 한편 具體的인 事業의 施行이나 執行은 內務部・法務部・教育部 등 政府의 17個 部處에서 그 事業의 性質에 따라 分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各 部處에 있어서 靑少年 關係 業務는 주된 業務가 되지 못하고 附隨的 業務로 取扱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결과 靑少年 關係業務가 等閑視 될 소지가 充分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靑少年問題가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으므로 政府組織法을 개정하여 國務總理 直屬機關으로서 靑少年廳을 設置하여야 하겠다.⁴¹⁾

41) 『前掲論文』, pp. 60-61.

第 4 章 青少年犯罪에 對한 對策

第 1 節 家庭에서의 對策

1. 家庭機能의 強化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青少年犯罪의 原因 중 家庭缺陷이 重要的 問題點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家庭은 人間이 成長過程에서 첫 번째로 經驗하는 社會環境이며 이 첫 번째의 社會環境에서의 經驗內容은 그 사람의 人格型을 決定하고 그 후의 發展의 基礎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重要的 것이다. 青少年犯罪의 경우 家庭의 機能喪失이 나타나는 곳에서 많은 犯罪가 發生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家庭에서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家庭은 成長하는 青少年에게 基本的인 社會이며 制度機關으로서 人格形成에 지대한 影響을 준다. 모든 青少年은 家族을 一次的인 媒介體로 하여 그 社會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人間으로 成長해 나가는 것이다. 즉 家庭은 青少年들의 人格形成과 健全한 社會人으로 發達하는데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生活舞臺이며 生活의 根據地이다. 家庭이 子女의 올바른 意識形成을 위하여 父母가 취할 教育的 行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1) 訓育的인 面

急速한 社會發展에 따라 요즘 問題視되는 家庭으로 訓育缺陷家庭을 들 수 있다. 青少年이 社會化 過程을 밟음에 있어 父母의 訓育 및 監督은 青少年에게 옳고 그름의 區別을 明確히 理解하게 하고 行動의 規範을 가

르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事項이 아닐 수 없다. 家庭에서의 適切한 訓育은 ‘支配-服從과 收容-拒否’가 適切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主觀的·獨善的 訓育方法을 止揚하고 客觀的·民主的 訓育方法에 의한 靑少年의 訓育은 犯罪豫防의 最善의 改善策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家庭에서 父母들은 靑少年에 대한 監督官으로서의 態度를 버리고 激勵者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하고 靑少年의 價値判斷力을 길러 주어야 하며, 家庭이 靑少年의 健全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된 家庭環境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⁴²⁾ 家庭에서의 靑少年에 대한 올바른 訓育方法으로서는 ① 父母들은 無條件的인 干涉이나 指示를 止揚하고 올바른 判斷力과 獨立心を 키워 주어야 한다. ② 지나친 保護나 放任보다 多情한 人間愛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協力者 및 人格體로서의 待遇를 해야 한다. ③ 올바른 交友關係를 設定·指導하며 올바른 異性交際를 指導하여 家族構成員으로서 所屬感을 갖게 하여야 한다. ④ 일방적 强要보다는 訓育으로, 禁忌보다는 勸獎으로 指導方法을 바꾸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幼年期부터 明心寶鑑 등 東洋的 倫理 및 건전한 道德心 涵養과 實踐的 指導를 시킨다. ⑥ 父母들 自身이 스스로 遵法的 態度·健全한 倫理·道德을 實踐하여야 한다. ⑦ 父母의 圓滿한 結婚生活을 통하여 항상 尊敬받는 行動을 보이며 父母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父母의 權威가 回復되어야 한다. 이상의 方法들을 無理없이 有效 적절하게 實踐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家庭像과 靑少年像이 確立될 것이며 靑少年이 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진실한 成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兪炳俊,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6), p.63.

2) 情緒 및 愛情的인 面

人間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情緒的 安定과 愛情은 반드시 必要하다. 感受性이 銳敏한 靑少年이 家庭에서 情緒가 不安하고 愛情이 缺乏될 때 크나 큰 犯罪를 저지르기 쉬운 것은 自明한 일이다.

우선 靑少年의 情緒的 不安을 除去하기 위해서 家庭環境의 對策을 논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⁴³⁾

① 新舊世代間의 價値觀의 差異를 解消해야 한다. ② 家族員, 특히 父母가 서로 敎養·知能·人間觀·性格·所望 등의 차이를 解消해야 한다. ③ 家庭의 主導觀 또는 利害關係를 중심으로 한 葛藤의 차이를 解消해야 한다. ④ 正堂한 家族構成이 破壞되어 血緣關係가 없는 자가 介入했을 때 이의 葛藤을 해소해야 한다. ⑤ 兩親의 一方이 婚外의 性關係를 갖는 경우 靑少年의 올바른 異性觀 確立에 支障을 招來하므로 이를 止揚해야 한다. ⑥ 家族中에 精神的·身體的 缺陷者가 있을 때 靑少年의 올바른 人生觀 定立에 障礙가 되므로 이들을 적절히 치료·교정하도록 한다. ⑦ 過密住居의 解消, ⑧ 家族員間의 宗教上 差異의 解消, ⑨ 貧困으로부터의 脫皮이다. 이상과 같이 家族員을 中心으로 여러 가지 情緒的 不安定의 改善을 열거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父母와 靑少年의 마음의 姿勢라고 하겠다.

2. 家庭役割의 增大

社會의 급격한 變化는 家庭에 여러 가지 問題와 危機를 가져오게 했다. 離婚率의 增加·靑少年 家出의 增加·近親相姦의 빈번한 發生·自殺·藥物中毒 등 수많은 問題들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家庭問題는 家

43) 兪炳俊, 『前掲論文』, pp.63-64.

族倫理觀 不在에 따라 家庭의 機能이 제 役割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⁴⁴⁾ 現代家庭에 만연해 있는 諸般 家庭問題를 未然에 防止하고 더 나아가 健全家庭을 維持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家族規範下에 家族의 役割이 強化되어야 한다.

父母에 대한 孝를 중심으로 夫婦는 서로 人格을 尊重하고 協議하여 民主的 關係를 維持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役割을 補完하며 父母는 子女의 社會化를 위해서 가족의 教育機能을 수행해야 한다. 知識爲主의 教育에서 벗어나 價値教育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을 責任이 강한 自律的 人間으로 그리고 進取的이고 開拓的인 姿勢를 가진 人間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家族利己主義에서 벗어나 過剩保護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家族의 安定性을 위해 夫婦는 忍耐할 줄 알아야 한다. 父母는 和睦한 家庭을 實現하여 生活속에서 靑少年에게 모델이 되고 心理的 安定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人間價値를 전수하여 삶의 社會的 뿌리를 내리게 하는 責任을 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父母는 子女에게 一貫性있는 關心과 保護를 하며 子女와 共感帶를 형성하기 위해 對話와 討論을 통해 意見을 收斂하여 열린마음의 對話通路를 가지며, 子女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人格을 가진 人間으로 수용하여 靑少年들이 스스로 行動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음을 認定해야 한다. 父母는 生活에 있어서 말과 行動이 一致하는 模範的인 態度를 維持함으로써 자랑스러운 父母가 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3. 大家族制度를 維持한 家庭優待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血緣을 중심으로 多世帶가 한 지붕 밑에서 생활

44) 文化體育部, 『靑少年白書』, (1994), pp.383-384.

하면서 父母와 웃어른을 恭敬하고 敬老孝親을 倫理的規範으로 삼아 왔으나, 오늘날 急激한 産業化, 都市化의 進行으로 인해 家族의 構造도 核家族化하는 傾向이 뚜렷해졌다.⁴⁵⁾

政府는 核家族化 현상의 深化에 따른 靑少年·婦女·老人問題 등 각종 社會問題 發生을 最小化하고, 子息들이 父母나 祖父母를 직접 奉養하는 우리의 좋은 傳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各種 施策을 推進하고 있다.

① 孝行者 등 發掘·褒賞

政府는 매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부모를 극진히 奉養하여 다른 사람의 模範이 되는 효행자와 傳統 模範家庭·장한 어버이·노인복지 기여자를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우리의 傳統的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② 相續稅 追加控除

3代 이상 대물림한 住宅이나 5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成年의 直系卑屬인 相續人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一般相續稅 控除額에 추가하여 주택가액의 90%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상속시 同居家族 중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3천만원의 人的控除를 실시하고 있다.

③ 所得稅 控除

綜合所得稅 등에 있어 60세(여자 55세)이상의 (祖)父母를 봉양할 경우 연 48만원의 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또한 봉양하고 있는 (祖)父母가 65세 이상인 경우 敬老優待 特別控除로서 연 48만원의 소득세 공제혜택을 새

45) 『上揭書』, pp.384-386.

로이 追加 부여하고 있다.

④ 讓渡所得稅 免除

父母와 子女가 각각 住宅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한 경우, 3년이상 거주한 집을 1년내에 賣買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⑤ 老父母 奉養手當 支給

公務員의 경우 매월 1만 5천원의 부모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각급기관 및 기업체에 擴散·波及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⑥ 住宅普及 優先

老父母와 2년이상 同居하고 있는 세대주가 個人住宅의 新築·購入·改良資金의 貸出し 최고 500만원까지 割増하여 貸出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政府施策이 展示效果的이고 一時的이어서는 안되며, 보다더 擴大實施와 아울러 公務員을 비롯한 各 企業體에서도 特採하여 優待하여야 할 것이다.

第 2 節 學校에서의 對策

1. 有害環境淨化

各級學校 周邊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有害한 業所의 범람으로 靑少年教育에 惡影響을 招來하고 있어 學校周邊에 散在하고 있는 非教育的인 有害環境을 淨化하여 學習雰圍氣 造成 및 學生의 健全한 心身發達을 도모하고자 한다. 靑少年과 관련된 有關기관 및 善導團體와 合同으로 學校周邊에 대한 靑少年 有害業所를 淨化하는 한편, 登下校길에서 善良한 學

生을 괴롭히는 不良暴力輩 및 風紀事犯을 持續的으로 團束하였다.⁴⁶⁾ 同時에 有害業所에 대한 自律 淨化活動이 展開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가고 있으며 通學路 周邊 112巡察車의 反復巡察과 豫防活動을 強化하고 深夜 無斷徘徊者의 善導에 힘쓰고 있다. 學校 周邊의 電子娛樂室·漫畫가게 등 靑少年 脫線의 原因이 될 수 있는 各種有害業所에 대하여 有關기관과 合同으로 團束活動을 하고 있다.⁴⁷⁾

가끔 團束機關이 業者와 癒着關係로 副作用이 있었다. 그러므로 단속할 때는 合同團束班 (言論·行政機關·檢警察·議員·學校 등)을 構成하여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2. 學校懲罰規定 嚴格適用

入試爲主의 現實教育에서 學校中退는 靑少年들에게 人生에 대한 挫折을 느낄 程度로 큰 事件이 된다. 그래서 中退生들이 犯罪나 非行에 빠질 可能性이 많아지고 實際로 靑少年犯罪者 중에서 中退生이 차지하는 比重이 늘어나고 있다.⁴⁸⁾

46) 1993년 警察廳 資料에 의하면 學校 有害業所의 違反內容別 團束實績을 보면, 1992년도에 비해 113%가 增加한 총 60,311건이다. 그중 營業時間 違反이 12,361건(22.1%), 無許可가 14,145(23.4%), 靑少年 出入默認이 6,034건(10%), 頽廢·變態營業이 3,910건(6.5%)의 順이다. 1992년도에 비해 團束實績이 31,965건이나 增加한 것은 學校周邊風俗營業所에 대한 淫亂, 頽廢行爲集中團束을 持續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警察은 이중 792명을 拘束하고 나머지는 不拘束, 즉심, 訓放措置를 하였으며, 31,770건에 비해서는 別途의 行政處分을 내렸다. 團束實績을 業種別로 分類하여 보면 大衆飲食店이 29,728개소 (49.3%), 전자유기장 3,700개소(6.1%), 만화가게 3,647개소(6%), 遊興業所 3,510(5.8%)順이다. (문화체육부, 「靑少年백서」 (서울:범신사, 1995, pp.391-392).

47) 文化體育部, 『上揭書』, pp.391-392.

學校中退의 實態⁴⁹⁾는 定規學校에 다니다가 非行·疾病·家事·其他理由로 卒業하지 못하고 中途에서 學校를 그만둔 사람을 意味한다. 學校中退者는 自退(勸告退學)와 除籍(命令退學)이 있는데 自退는 나중에 復學할 수 있지만 除籍은 復學할 수 없다고 한다.

學校中退의 原因으로는 異性問題·就職問題·親舊피임 등 個人問題와 校則違反, 成績不良·檢定考試準備·敎師를 미워함·學校不適應 등 學校問題가 包含되었는데, 1981년-1991년사이에 그 比重이 18.5%에서 37.8%로 약 20%나 增加했다. 그리고 直接的 原因으로 인하여 學校懲罰規定에서 無期停學 또는 退學處分을 받아 학교를 中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된 것이 學校懲罰規定의 處罰內容이 너무 苛酷하다는 뜻이다. 規定의 內容에 一貫성과 妥當성이 없다. (懲罰用語에 統一성이 없다. 處罰程度가 크다. 現實에 어긋난 規定이 많다. 敎師의 努力으로 是正할 規定이 많다.)

規定을 實際 行爲에 適用해서 處罰할 때 그 基準이 一定하지 않다. (懲罰量에 不均衡이 많다. 學校 事情이나 敎師 主觀이 많다.) 또한 行爲 結果만 보고 處罰하여, 善導나 非行豫防에 無關心한 事例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學校 中退者의 對策으로는 다음과 같다.

(1) 中退者의 5대 原因에 들어가는 “不良한 親舊의 피임”이라는 점을

48) 韓國靑少年開發院, 『靑少年問題論』, (서울:서원, 1993), pp.243-253.

49) 1981년-1986년까지 少年院 등 保護施設에 수용된 靑少年中에서 學校 中退者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國民學校 中退者는 19.1%에서 6.6%로 많이 줄어든 반면, 中學校 中退者는 23.9%에서 36.7%로 늘고, 高等學校 中退者는 11.9%에서 21.7%로 많이 늘었다. 그래서 保護施設에 수용된 全體 靑少年 中에서 學校中退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1981년의 54%에서 1986년에는 65%로 增加했다(한국靑소년개발원, 『靑소년문제론』 (서울:서원, 1993), pp.243-253.

家庭에서는 미리 알고 나쁜 習性에 빠지지 않도록 指導해야겠다.

(2) 問題靑少年은 問題家庭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父母 自身이 靑少年들에게 模範이 되는 生活을 해야 되겠다. 中退者多數가 ‘兄弟 姉妹 사이나 父母 사이의 葛藤 때문에 家庭이 和睦하지 못하다’라고(63%) 不平했다.

(3)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學校를 中退한 다섯가지 重要한 理由 중의 하나이므로 貧民家庭 특히 缺損家庭이나 少年少女家長이 있는 집에 대한 家庭福祉事業을 強化해야 겠다. 現在 全體公教育費에서 個別家庭이 負擔하는 比重은 中學校 37.3%, 高等學校 60.6%, 그리고 대학교가 62.8%이므로 좀더 根本的인 對策으로 公教育에 대한 政府의 投資를 상당히 늘려 個別家庭의 教育費 負擔을 덜어 주어야 겠다.

(4) 學生懲罰規定과 그 適用節次를 改善해야겠다. 學校밖으로 쫓는 退學處分은 慎重하고 가능한 抑制해야겠다. 中退生이라는 烙印과 剝奪感, 疏外感은 非行과 犯罪의 誘發原因이기 때문이다.

(5) 問題學生指導와 相談活動을 強化해야겠다. 相談에 관한 專門的인 全擔教師를 必須的으로 學校에 두는 制度가 마련되어야겠다.

(6) 中高等學校 教師를 正堂하게 待遇하고 그들의 資質을 向上시켜야겠다. 미운 教師와 不適應으로 學校를 그만둔다는 것은 教師답지 못하다는 뜻이므로 教師의 資質을 높이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겠다.

(7) 全人教育에 알맞게 教育課程을 고치고 건전한 學生活動을 獎勵해야겠다. 學校入試의 最高觀은 個人適性觀을 無視하는 處事이기 때문이다.

(8) 中退生 指導에서 學校가 더 큰 責任을 져야겠다. 産業化된 現代社會에 필요한 人間 生産이라고 볼 때, 中退生은 學校가 만들어 낸 失敗作

品이 된다.

(9) 靑少年들에게 올바른 職業意識을 鼓吹해야겠다.

(10) 社會는 就業·賃金·昇進에서 學歷에 따른 差別을 줄이거나 撤廢를하여 中退生이라 할지라도 希望을 갖고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겠다.

(11) 靑少年의 就業能力을 키워주기 위해 職業訓練을 強化해야겠다.

(12) 靑少年들에게 就業情報를 提供하고 일자리도 斡旋하는 일에 더 努力해야겠다. 地方自治團體와 勞動部는 就業情報센터와 職業案内所를 擴大해서 地域別로 中退者 名單을 把握하고 郵便을 利用해서 定期的으로 就業情報와 職業訓練所를 紹介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社會에서의 對策

1. 有害業所 抑制

靑少年들이 자주 出入하는 有害業所로는 만화가게·전자오락실·디스코장·롤러스케이트장·카페·당구장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施設의 利用自體가 靑少年들에게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場所를 통해 靑少年들이 吸煙이나 飲酒와 같은 여러 가지의 問題行動을 배우게 되거나 非行靑少年과 接觸할 機會가 많은 등 靑少年들의 脫線을 助長하는 場所로 注目받기 때문에 이들 場所에 대한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위에 羅列한 것중 比較的 有害度가 높은 전자오락실과 디스코장을 중심으로 實態를 보며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⁵⁰⁾

50) 도종수의, “靑少年有害環境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韓國靑少年研究員, pp.85-96.

1) 전자오락실

靑少年들을 위한 娛樂施設이 不足한 現 狀況에서 靑少年들이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施設物중의 하나로 전자오락실을 들 수 있다. 現在 우리 나라에는 전자오락실이 健全한 놀이시설로 認識되기보다는 靑少年들의 犯罪動機를 誘發시키는 否定的인 場所로 認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理由는 우선 오락의 內容이 때리고 爆發하고 부수고 하는 것으로 情緒에 深刻한 問題를 던지며 어둡고 지저분하며 시끄러운 가운데 吸煙・賭博 등 各種 非行이나, 費用마련을 위해 暴行・竊盜 등 犯罪行爲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0년 韓國靑少年 研究員의 資料에서 施設 및 場所 利用經驗 및 有害度評價를 보면 전자오락실을 靑少年들이 얼마나 자주 利用하고 있는지에 대한 利用經驗이 提示되어 있다.⁵¹⁾ 이 結果를 보면 男子高等學生의 92.5%, 男子中學生의 90.7%, 男子初等學生의 71.9%, 女子高等學生의 60.2%, 女子中學生의 43.2%, 女子初等學生의 16.2%가 지난 89년 1년동안에 전자오락실을 利用한 적이 있다. 有害度 評價에서 나타난 結果를 볼 때 靑少年들은 전자오락실이 有害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餘暇活動 方法이 별로 없는 現實과 利用의 便利性및 전자오락이 주는 瞬間的 재미 때문에 전자오락실을 중요한 餘暇活動의 場所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오락실이 靑少年의 중요한 餘暇施設로 자리잡고 있느니만큼 暴力性 爲主의 오락내용 改善과 不法的인 射倖性 오락기기 設置團束과 전자오락실의 施設, 雰圍氣등을 改善하여 健全한 놀이시설로 轉換하는 作業이 時急하다.

51) 『上揭論文』, p.66.

한편 靑少年들로 하여금 전자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禁止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慎重히 검토해 볼 必要가 있으며, 無條件인 團束보다도 전자오락을 즐기는 어린이나 靑少年들에 대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도 重要하다. 最近의 靑少年들은 어른 世代에 비해 컴퓨터나 전자오락기에 親熟하고 關心도 많다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전자오락을 하지 말라고 禁止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關心을 갖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스코장

디스코장은 眩亂한 照明과 강한 비트의 音樂이 있는 가운데 煽情的인 肉體的 움직임을 反復하므로 性衝動을 刺戟하여 各種 性犯罪과 遊興費 調達을 위한 各種犯罪로 連結이 된다는 점이 既存 研究나 報道를 통해 指摘되어왔다. 디스코장의 利用程度를 보면 全體應答者의 18.4%가 지난 89년 1년내에 디스코장을 利用해 본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集團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男子高等學生은 17.1%, 女子高等學生은 7.4%, 男子中學生 5.9%, 女子中學生 1.6%이며 디스코장의 有害성에 대해서는 全體應答者의 66.8%가 有害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靑少年의 出入을 豫防하기 위한 方便으로는 디스코장의 利用의 경우, 行政當局의 團束이 制限된 人力으로 인해 限定的이고 一時的인 반면 營業主들은 組織化되고 知能的인 情報交換으로 靑少年을 對象으로 계속 營業行爲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團束班으로는 實效性的의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團束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業者들의 自體淨化와 社會的인 監視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重要하다. 현재, 韓國 걸스카우트 聯盟會館 2層에 靑少年 專用 디스코장이 開場돼 部分的으로 靑

少年들이 큰 부담없이 젊음을 發散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각각의 靑少年 專用 디스코장은 매주 一定한 曜日과 時間에 運營되며 入場料는 飲料水 값만 받거나 無料이며 活動內容도 디스코 춤 뿐만 아니라 多樣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並行하여 實施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靑少年 전용 디스코장을 全國적으로 擴大實施해야 할 것이다.

2. 出入制限地域의 擴大

既存의 연구들에 의하면 각종 性的 刺戟이 늘어나고 性道德이 紊亂해짐에 따라 靑少年의 性經驗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욕을 解決하는 주요수단은 私娼街 출입이다.⁵²⁾

1990년 韓國靑少年研究員의 자료집에서 私娼街 이용경험 및 有害度 評價를 보면 사창가를 출입하는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⁵³⁾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7.8%가 지난 89년 1년내에 사창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중에서 남자고등학생의 10.8%, 남자중학생의 5.4%가 지난 1년간에 사창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근로靑少年의 경우 남자의 26.6%가 지난 일년내 이용경험이 있으며 월 1-2회 이상 이용자는 남자고등학생의 2.7%, 남자중학생의 2.4%로 나타났다. 근로靑少年의 경우 남자의 26.6%가 지난 1년내 이용경험이 있으며 월 1-2회이상 경험자는 5.4%에 달했다.

유해성에 대해서는 중학생이상 응답자의 71.8%가 아주 해롭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82.9%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어 아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 건전성장을 위해 유해환경으로

52) 韓國靑少年研究員, 『前掲論文』, pp.86-87.

53) 『韓國靑少年研究員資料集』, (1990), p.87.

작용하는 사창가 整備 및 性的 好奇心이 강한 청소년을 對象으로 한 올바른 性教育 및 運動 등의 對策活動을 활성화하는 措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第 4 節 國家에서의 對策

1. 就業機會斡旋

未就業青少年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부터 惹起되는 問題點은 실로 深刻하다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청소년이 처한 가장 심각한 問題點은 이들이 어느 청소년 집단보다 犯罪誘發의 可能性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들은 職場에서 업무에 종사할 만한 機會가 제공되지 못한채 뚜렷한 目的意識없이 부정적인 自我意識과 社會觀을 가지고 있으며 教育水準도 낮고, 父母의 社會經濟的 지위도 낮으며, 家族의 一員으로서의 活動도 未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⁵⁴⁾ 不良集團과 어울리다 犯罪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1990년 體育部の 青少年白書資料集에서 범죄자의 職業別 상황을 보면 이러한 傾向을 잘 이해할 수 있다.⁵⁵⁾ 청소년 犯罪者중 無職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上位를 보이고 있으며, 88년 現在 30.3%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취업 青少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經濟的 貧困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比해서 부모의 經濟的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 경제적 貧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자신들도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經濟的 貧困

54) 서정화 外, “非進學, 未就業 青少年對策의 方向探索,”(弘益大 教育研究所, 1986), pp.24-27.

55) 體育部, 『青少年白書』, (1990), p.359.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韓國靑少年研究員資料에서 청소년 범죄의 생활정도별 상황을 보면 下流層家庭 청소년들이全體 청소년 범죄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90.1%, 84년 88.5%, 88년 87.1%로써 絶對的임을 알 수 있다.⁵⁶⁾ 이상과 같이 미취업청소년들의 職業別 狀況과 生活程度別 狀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따라서 靑少年問題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체육부에서는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보호, 支援對策을 수립하였는데 計略的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職業訓練

職業訓練은 기능이 없는 청소년에게 자기 開拓의 기틀이 될 수 있는 技術教育實施를 목적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계획인원 1,919명에 대하여 6억 1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受講料·手當 등을 支援하게 되며 訓練職種은 취업이 용이하고 장래전망이 밝은 重裝備運轉·熱管理·冷凍·洋裁·産業디자인·컴퓨터 등을 청소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技術訓練의 實效性を 提高시키고 있다.

2) 就業斡旋

취업알선은 일선 행정기관장⁵⁷⁾ 책임하에 機能保有者, 당장 就業이 時急

56) 『韓國靑少年研究員資料集』, (1990), p.19.

57) 1989년 12월말 현재 就業斡旋을 하고있는 기관은 勞動部傘下 43개 國立就業安全機關과 시·도에서 운영하는 14개 公共職業案内所, 707개 私設職業案内所가 있다. 89년 한해동안 이들 斡旋機關을 통하여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은 총 667,529명이며 이중 85%인 566,871명이 취업하였고 이중에서 청소년 111,898명이 취업알선을 받아 73,693명이 취업하였다. (『韓國靑少年研究員資料集』, 1990, p.19에서 재인용).

한 靑少年을 대상으로 企業體 등에 취업을 斡旋하여 주고 있으며 또 주기적인 就業情報提供과 함께 사전 就業指導를 실시하고 있다.

3) 就業情報提供

情報不在 때문에 취업을 못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서는 多樣的 방법으로 취업정보를 迅速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勞動部傘下와 市·道 그리고 사설직업안내소가 職業訓練을 비롯한 就業情報를 제공하고 있으나 學校와는 연계가 미미하며, 실질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政府가 좀더 果敢한 투자를하여 就業斡旋廳과 같은 것을 각 市·道까지 開設하여 靑少年들이 자유롭게 信賴感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進學機會斡旋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靑少年들과 같이 비진학 靑少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機會가 提供되지 못한 채 否定的인 자아의식과 社會觀을 가지고 있으며 教育水準도 낮고 父母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도 낮으며 가족의 一員으로서의 활동도 未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⁵⁸⁾ 不良集團과 어울리다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韓國教育開發院의 “中退 및 비진학 靑少年의 進路 實態에 관한 調查研究”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自信感和 信賴感이 낮으며 家庭의 安樂程度·부모의 愛情認知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58) 서정화의, 『上揭論文』, pp.45-50.

적 貧困이 上級學校로의 진학가능성을 약화시킴에 따라 疎外感과 劣等感을 낳게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進展과 더불어 貧富隔差의 深化는 하류 계층 청소년의 相對的 剝脫感을 助長하고 이들은 自暴自棄하여 사회의 생산적인 성원이 되지 못하고 非生産的인 遊休勞動力으로, 또는 범죄유발의 잠재요인으로 轉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韓國靑少年研究員의 資料에서 靑少年 犯罪의 교육정도별 상황을 보며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彷徨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급학교의 진학 失敗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挫折感·劣等感·부모의 期待를 성취하지 못한 罪責感·교우·사회로부터의 疎外感·孤立化에서 오는 不安感·誘惑과 葛藤, 사회의 冷待에 대한 反抗 혹은 反感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犯罪現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문화체육부에서 수립한 保護·支援對策의 概略的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⁶⁰⁾

1) 技術學校 및 高等技術學校

技術學校와 高等技術學校는 初等學校 또는 中學校를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正規 중학교와 高等學校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하여 設立하였다.

2) 公民學校와 高等公民學校

公民學校와 高等公民學校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學齡을 초과한 사람이나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普通敎育과 公民적 社會敎育·

59) 『韓國靑少年研究員資料集』, 1990, p.20.

60) 文化體育部, 『前掲書』, 1990, pp.350-352.

職業教育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공민학교는 初等學校 過程을, 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過程을 교육하고 있다.

3) 放送通信學校

경제적인 事情 등으로 정규학교교육을 중도에서 拋棄한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저렴한 학비와 放送講義 등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高校 또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放送通信에 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에는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教育對象者들에게 교육기회를 提供하는 放送通信高等學校와 大學教育 惠澤을 받지 못한 직장인과 學齡超過者들에게 교육기회를 提供하는 방송통신대학이 있다.

4) 學力認定 社會教育施設

社會教育法은 불우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새마을 청소년학교 및 聖經구락부학교 등 無認可 학교를 동법령에 依據 學校形態사회교육시설로 市.道교육위원회에 登錄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시설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3년제 각종학교의 기준과 동등 이상인 施設. 設備를 갖춘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위원회 教育監이 同校의 申請을 받아 指定要件 및 기준에 맞는 때에는 學力認定社會教育施設로 指定하고 있다. 위와 같은 進學機會斡旋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좀더 擴大실시로 惠澤을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찾아 進學의 機會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政府의 靑少年全擔部署設置

현재 靑少年 문제를 주도하는 國家機關으로는 國務總理를 위원장으로 하는 靑少年 對策委員會가 設置되어 靑少年의 善導 및 保護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의 整頓에 관한 事項을 管掌하며 國무총리 기획조정실이 그 사무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具體的인 사업의 施行이나 집행은 內務部·法務部·敎育部 등 政府의 17개 部處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부처에 있어서 靑少年 관계업무는 附隨的인 업무로 취급하게 마련이다. 靑少年은 미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만큼 보다더 비중을 크게 두어 靑少年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야겠다. 현재 미미하게 되어있는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靑少年廳을 신설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靑少年청에는 첫째, 指導育成局을 두어 모든 靑少年들의 건전한 指導와 육성을 위한 각종 政策을 立案하여 施行하고, 둘째, 非行豫防局을 두어 靑少年 非行을 예방하기 위한 諸般 施策을 現행 警察과 檢察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까지 포괄하여 담당·처리할 수 있도록하며, 셋째, 非行矯政局을 두어 비행靑少年의 矯正과 社會復歸를 위한 제반시책을 立案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하고, 넷째, 特殊靑少年局을 두어 勤勞靑少年·農漁村靑少年 등 특수한 與件하에 있는 靑少年들을 全擔하여야 한다.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서 心理學·敎育學·社會學·犯罪心理學·精神醫學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각 담당업무별로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保健福祉部·敎育部·內務部·法務部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靑少年 關係업무를 취급하여 管掌함으로써 적정한 政策의 立案 및 효율적인 執行이 가능할 것이다.⁶¹⁾

61) 정하룡, 『前掲論文』, p.61.

第 5 章 結 論

靑少年은 未來의 主人公이며 장차 이나라를 이끌어갈 後世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전하게 育成하는 일은 既成世代 모두에게 부여된 莫重한 使命이다.

오늘날 急激한 經濟成長과 社會構造의 變遷 속에서 靑少年의 범죄는 날로 組織化, 兇暴化, 知能化 傾向을 보이며 犯罪年齡의 年少化, 累犯者의 增加라는 複雜한 樣相까지 보이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본 研究에서는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靑少年 犯罪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첫째로, 精神的인 側面에서는 靑少年들의 價値觀의 葛藤과 混亂, 불안정한 攻擊心理 급속한 都市化 과정에서 나타나는 外來文化의 무비판적인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家庭的 側面에서는 부모의 子女社會化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권위약화와 부모자신의 자녀교육방침 및 行爲道德基準의 定立缺如에서 오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一貫성과 敎育性 결여, 부모가 원하는 자녀상과 자신이 원하는 자기상의 不一致에서 오는 갈등현상 및 이에 따른 相互 理解와 의사소통의 缺如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敎育的 側面에서는 교육과정상 全人的敎育의 결여, 입시준비위주의 교과과정 편성 및 심성교육의 미비,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機會의 감소와 학생과 교사간의 형식적 지도교육 및 불건전한 異性交際와 不良서클가입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社會的 側面에서는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 및 호화스러운 유행인구의 밀집, 불건전한 오락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이다.

以上에서 제시한 靑少年犯罪의 原因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家庭에서는 가정분위기를 화목하고 명랑하게 영위하여 가정애착을 갖도록 하며, 家訓을 세우고 가정규율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家族構成員으로서 소속감 및 연대감을 갖도록 하고 부모들의 現代的 價値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자연스러운 이성간의 교제와 性敎育 실시 및 交友間 자연스럽게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자녀에 대한 愛情과 지도, 관찰이 필요하다.

둘째로, 學校에서는 학생들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犯罪原因의 사전 제거 및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학교의 諸般施設擴充과 敎師의 增員 및 資質向上에 노력해야 하며 전교사의 카운슬러화로 학생들의 고충 및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하며, 형식적인 特別活動時間의 개선으로 참다운 여가선용활동의 지도와 올바른 價値觀과 倫理意識 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地域社會의 對策으로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제거 및 주변상인들의 도덕성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지역주민과 학교, 학부모의 연대감을 통한 올바른 청소년 육성 및 선도대책의 추진, 건전한 여가선용 시설 및 휴식공간의 확충,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자율적 규제, 비행예측방법의 완비로 사전에 靑少年犯罪의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와 같이 靑少年 犯罪의 豫防對策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社會機關이나 민간단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靑少年 個人 스스로가 자기중심을 가지고 자기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극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생활방식이나 자세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직분에 충실할 때 자신의 미래는 물론 나라의 장래도 밝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

권이중, 『사회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배영사, 1997.

——, 『靑少年倫理』, 서울:백산출판사, 1991.

警察大學 附設 搜查幹部研修所, 『靑少年犯罪對策: 課題研究報告書』,
第3輯 1號, 1986.

金質斗, 『韓國少年犯罪研究』: 現象・原因・豫測, 서울 博英社, 1983.

金泳謨外, 『韓國靑少年研究』, 서울: 韓國福祉政策研究所 出版部, 1985.

김준호, 『한국의 청소년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內務部 治安本部, 『2000年代를 向한 警察發展方向』, 1985.

文溶隣, 『家庭에서의 道德敎育』, 서울:법문사, 1990.

文化體育部, 『靑少年白書』, 1996.

法務部, 『靑少年犯罪研究』, 第12輯, 1994.

서울少年鑑別所, 『非行少年의 鑑別』, 第15輯, 1994.

李潤鎬, 『韓國靑少年非行論』, 서울:法文社, 1991.

이영희, 『청소년비행과 교정』,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1987.

鄭榮錫,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1987.

조병인, 『犯罪發生論』, 서울:도서출판한림원, 1993.

정하성, 『청소년윤리』, 서울:백산출판사, 1991.

池光準, 『靑少年犯罪와 非行』, 서울:삼신각, 1992.

<論文>

姜孟鎭, “靑少年犯罪의 同鄕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남재봉, “靑少年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柳培浩, “靑少年非行과 家庭環境과의 관계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朴相浩, “靑少年善導를 위한 行政對策”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朴廷鎬, “靑少年犯罪의 家庭環境的 要因과 家庭環境의 改善案에 관

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선희숙, “家庭環境的 側面에서의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그 對策에 관

한 研究”,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오제환, “韓國靑少年犯罪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李國炯, “靑少年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李미리나, “韓國學生犯罪 實態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탁재, “靑少年 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李賢銀, “靑少年犯罪 動向 및 그 要因에 관한 研究”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최차영, “靑少年범죄의 원인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崔華淑, “靑少年犯罪의 家庭環境的 要因과 改善案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하재철, “靑少年非行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外國 文獻 >

Bartollas, Clemens,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5.

Becker, Howard,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Bynum, Jack E. and William E. Thompson,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Needham,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1989.

Cesare Lombroso, *Crime: Its Cause and Remed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11.

Charles B. Goring, *The English Convict*,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13.

Cloward, Richard A. and Lloyd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of Delinquency Gangs*,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 Cohen, A. K.,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5.
- E. A. Hooton, *The American Criminal: An Anthropological Stud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9.
- Galliher, John F. and James L. McCartney, *Criminology: Power crime, and criminal law*,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7.
- Giallombardo, Rose (ed.), *Juvenile Delinquency: A Book Reading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82.
- Gibbons, Don C., and Marvin D. Krohn, *Delinquent Behavior*, 5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91.
- Glueck, Sheldon and Eleanor T.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Haskell, Martin R. and Lewis Yablonsky, *Crime and Delinquency*, 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8.
- John. E. Exner,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Dimensions of personality, 1977.
- Klempner Jack and Rodger D. Parker,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New York: Franklin Watts, 1981.
- Liska, Allen E., *Perspectives on Devi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1.

- Nye, F. Ivan,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58.
-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 Roberts, R. Albert, *Juvenile Justice: Policies, Programs, and Services*, Chicago, Illinois: The Dorsey Press, 1989.
- Sanders, William B.,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 Shoemaker, Donald J.,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9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74.
- Trojanowicz, Robert C. and Merry Morash, *Juvenile Delinquency: Concepts and Control,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 Vold, George B. and Tomas J. Bernard,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Williams III, Frank P. and Marilyn D. McShane, *Criminolog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and Treatments of Juvenile Delinquency

Chun, Byung Dug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olicy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Due to the unmaturred control of mind and body, the youth are apt to get influenced enormously from the around circumstances in the process of maturity toward grown-up.

By the way, there are too many bad factors to influence the youth at home, in school, in workshop and local community. So, we can say that the juvenile delinquency is not only caused by teenagers themselves but also by the around circumstances.

In modern times, juvenile delinquency is gradually becoming collective, organizing, urbanizing and yourger.

In fact, increasing are rape, assault, brutal commitment of crime by juvenile.

Rapid economic progres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mized with the decline of moral standard and made many quantity of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worse happens to the youth who live in the slum where many crimes are committed. The youth are easy to get dyed in the bad influence.

The youth need to get appropriate education at home to shape independent personality and cope with the social life for the future.

Unfavourable conditions of home life are dangerous factors for the youth to get invoved in the crimes.

One of the other problem is the teenager's relationship with other bad friends. The youth are desire to get in some peculiar circle and it is not easy, once they get involved in some circle, to get out of them.

Actually, school has a big responsibility for proper edication of the youth, but nowadays the goal of education is just centered on the improvement of their competition in many kinds of exems.

There are big risks also for the youth who work in the factory which has unhealthy and corrupt condition arround it.

In conclusion, home, school, workshop, local society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ne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o join together to get rid of the sick conditions.

Juvenile delinquency will be eliminated or reduced by such and earnest endeavor.

감사의 글

가파른 낙산 언덕길을 향하여 항상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 오른지 두해반은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갔지만 이 기간이 제게 있어서는 새로운 학문탐구의 시간이었으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학업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위 모든분들께 감사할 드립니다.

이 논문의 시작부터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 주신 정주택교수님, 날카로운 비평으로 논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신 정성택 교수님과 이성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이 나오기까지 항상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님, 어머니님 작은 아버지님과 뒷바라지를 위해 고생을 잘 참고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고은, 창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논문의 편집을 도와 준 이은주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7. 12.

千 炳 德 드림